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 (303건)
및 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51건)**

2016. 5.



국무조정실

목 차

I.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 (303건)	3
①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1. 입지·개발	4
2. 창업·진입	11
3. 부담금 수수료 등 준조세	16
② 기업 영업활동 자율성 확대	
1. 판로 영업활동	21
2. 투자·설비투자	27
③ 인력·기술·행정 부담 경감	
1. 인력 (고용 및 교육)	29
2. 기술기준	33
3. 행정부담	35
4. 절차간소화	40
④ 검사 및 제재처분 완화	
2. 검사의무	43
2. 제재처분 완화	46
II. 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51건)	50
1. 무인이동체 분과	53
2. ICT 융합분과	59
3. 바이오헬스 분과	69
4. 에너지 신소재 분과	82
5. 신서비스 분과	84

경기대응을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 (303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1 입지개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녹지·관리지역 등 보전지역은 공장증축 등이 제한되고 20% 건폐율이 적용되나 지정 이전 공장은 '16.12.31까지 40% 적용 (개선) 기존공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18.12.31까지 연장 	보전지역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활성화 및 부담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증축 불가 (개선)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건폐율 40%까지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및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지역 확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수도권과 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 불가 (개선) 수도권과 광역시에 공판장 설치 허용 	수도권 및 광역시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영농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 6월)	국토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활성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공장의 용도 외 활용은 태양광 발전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개선) 태양광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업도 추가로 인정 	신설 투자 및 일자리 증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16.6월)	산업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 건축물 축조 제한 완화(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불가 (개선)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2년간 허용 	공장건물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 기업활동 부담 경감	건축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건축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수도권은 10%, 그 외는 5%를 의무 임대 (개선) 지식사업센터 의무임대 비율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해 투자 유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9월)	국토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관련 숙박시설 입지제한 한시적 유예(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은 도로와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50m)이 적용되어 숙박시설 증축 불가 (개선) 숙박시설 중 기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에 대해서는 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일반숙박시설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및 증축허용 	기존 관광호텔 등 증축 불편 해소,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응	국토계획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8	○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 한시적 완화(한시) - (현행)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3층 이하 건축물일 것 - (개선) 층수제한을 4층 이하로 2년간 한시 완화	관광펜션업활성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6.6월)	문체부
9	○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완화(한시) - (현행)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재배면적 10만㎡ 이상 이어야 함 - (개선) 면적규모에 상관없이 일단의 생산단지 구성 시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2년간 허용	쌀가공산업자에게 원료 안정적 공급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농식품부
10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 일부 허용(한시) - (현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토석의 채취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개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해 광산채굴 허용	약 44개소 현장, 5,700억원 경제적효과	산림보호법 (‘16.9월)	산림청
11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제 완화(항구) - (현행) 지역개발을 위한 관광·문화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관광·문화시설 등도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지역개발사업 투자 활성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6.6월)	행자부
12	○ 공유재산 장기대부 범위 확대(항구) -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는 기업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의 경우 가능 - (개선) 공장, 연구시설 외에도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등을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장기대부 범위에 포함	관광, 문화시설 유치 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6.6월)	행자부
13	○ 폐교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항구) - (현행) 폐교재산 수의계약 매각·대부 대상 일부 사업* 한정 및 지역주민 요건** 제한 *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 (개선) 지역주민 요건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대상 범위 확대	민간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여 폐교 활용 촉진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16.9월)	교육부
14	○ 전문농공단지 입주업종 비율 하향조정(항구) - (현행)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는 동일·유사·연관 업종이 60%이상을 차지해야 지정 - (개선) 전문농공단지 지정기준을 50%로 완화	전문농공단지 지정 활성화	농공단지 통합 지침 (‘16.6월)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 요건 완화(항구) - (현행) 서비스형 외투지역 입주하기 위해서는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요건 충족해야함 *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 (개선) 상시고용인원 15인 이상으로 완화 	서비스형 외국 투자지역 지정 활성화	외국인투자 지역 운영지침 ('16.6월)	산업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별 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 개선(항구) - (현행) 태양광은 설치용량에 따라 일반부지 설치시 0.7~1.2,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에 설치시 1.0~1.5 가중치가 부여되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일반부지로 간주 - (개선) 차단형 폐기물 매립시설은 기존 시설물로 인정하여 가중치 인상 	폐기물매립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16.5월)	산업부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수행요건 완화(항구) - (현행) 산업단지 내의 임대사업은 공장설립 완료 후에만 가능하므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산업 내 실행불가 - (개선) 캠코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없이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산업 내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산업집적법 ('16.9월)	산업부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구역 내 기존공장 업종 확대(항구) - (현행)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공장시설을 농수산물가공처리,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제한 - (개선) 농업진흥구역에 기 설치된 공장 중 10년 이상된 시설은 농기계, 농약 제조 등 농수산업 관련 공장으로 변경 허용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농지법 시행령 ('16.6월)	농식품부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간농지 전용제한 기간 완화(항구) - (현행) 개간사업은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농지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10년간 전용 제한 - (개선) 개간농지에 대한 전용제한 기간을 「산지관리법」을 준용 5년으로 완화 	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16.6월)	농식품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사업 인정범위 확대(항구) - (현행)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해당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해 가능 - (개선) 전통적 농가주택들이 본채 외에 행랑채 등 별채를 포함하는 구조로 건축된 경우도 있었던 점을 감안, 주건물 외 부속건물까지 인정 	농촌민박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6.11월)	농식품부 해수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조업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을 제한(20마력 이하)하고, 건물 옥상 등에 한정하여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가능 - (개선) 어로행위에 이용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 제한을 없애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장소 추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	상수원관리 규칙 (16.6월)	환경부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는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 오수배출시설은 입지 불가 - (개선) 팔당호와 마찬가지로 대청호의 경우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배제 	음식점, 숙박시설 입지허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환경부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지 경사도 기준 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산지전용은 필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전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40%이하인 경우로 제한 - (개선)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ha 미만의 산지를 평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 기준을 미 적용 	일반토지로 둘러 쌓여 있으나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의 개발제한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16.6월)	산림청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내 산지축산 부대시설 설치 허용(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백두대간 보호지역(대관령 등) 목장은 부대시설 설치 제한 - (개선) 백두대간 완충구역내 목장용지(235ha)에 대해서는 축산 부대시설 설치 허용 *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 등 	백두대간에 위치한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활성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6.9월)	산림청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림을 이용한 숲속야영장 허용(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동산림사업이나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숲속 야영장'이 포함되지 않아 국유림을 이용한 '숲속 야영장' 설치 불가 - (개선) 공동산림사업 및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요건에 '숲속 야영장' 포함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및 민간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산림청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구역내 농경지 지장목 등 벌채 허용(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경지 또는 주택 연결 지장목 벌채가 불허 - (개선)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결 지장목 벌채를 포함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	산림보호법 시행령 (16.6월)	산림청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7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시 경계표시 의무 폐지(항구) - (현행)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시 타당성 조사 신청자에게 해당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의무 부여 - (개선) 해당구역 경계표시 의무규정 삭제	타당성 조사 불편 해소 및 표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16.6월)	산림청
28	○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항구) -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일부 노유자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개발행위편의 제공	국토계획법 시행령 (‘16.10월)	국토부
29	○ 개발행위허가 기준 명확화(항구) - (현행) 개발행위허가 시 임상 측정방법을 지자체별로 입목축적도와 입목본수도를 혼용 - (개선)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도로 일원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개발행위허가 혼선 방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30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항구) - (현행)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마을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불가 - (개선) 마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면서도, 시설 확충을 통한 투자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31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한시) - (현행)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20%의 건폐율 적용되거나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은 ‘16.12.31까지 40% 적용 - (개선) 기존 공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18.12.31까지 연장	관리지역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및 부담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32	○ 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방법 개선(항구) - (현행) 다락은 높이가 1.8m이하인 경우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 - (개선) 한옥건축물의 다락은 높이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	창의적인 한옥건축물의 수요 확대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16.12월)	국토부
33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용도지역 변경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이라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관정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구역에 포함 불가 - (개선) 적법훼손지 등에 대해서는 입안 구역에 포함 가능	비도시지역에 개발 대상지역 확대로 투자확충을 유도 하면서도 계획적인 개발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 (‘16.6월)	국토부
34	○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승인 제외 요건 완화(항구) - (현행) 5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의 경우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 될 경우 사업계획승인 제외 - (개선)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도로 2개폭의 합계가 10m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부담완화	주택법 시행령 (‘16.12월)	국토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35	○ 가로구역의 범위 확(향구) -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모든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도록 규정 * 소규모로 노후·불량주거지를 개량하는 사업 - (개선) 한 면 이상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현황 도로(6m 이상) 등을 접해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36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향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단지, 연구특구 등 지정 시 해제 절차 추진 후 후속절차가 진행 - (개선)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중복 절차는 해제절차 추진 시 동시에 진행	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기간 단축 (약 1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6.6월)	국토부
37	○ 중소기업 전용단지 의무확보 면제(향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 개발 시 중소기업 등 전용단지(10% 이상)를 의무적으로 확보 -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중소기업 등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의무 완화	산업단지등 분양활성화 및 입지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6.6월)	국토부
38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선정범위 확대(향구) - (현행) 복구하려는 훼손지 선정 시 지역범위를 동일 시·군·구 10km내 및 인접 시·군·구 5km 내로 규정 - (개선) 지역범위를 해제대상이 속한 광역으로 확대	개발사업자 투자 부담해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39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등 이축 시 규모제한 완화(향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이축)시 연면적 232㎡(지정당시 거주자: 300㎡) 이하로 제한 - (개선) 철거당시 기존 규모만큼 건축 가능	주민의 주거 및 생활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40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향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범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 시설 제외 - (개선)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 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포함	난방비 절감 및 생활환경 개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41	○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 설치주체 확대(향구) - (현행)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은 마을 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만 설치 가능 - (개선)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 설치 허용	지역특산물 판매 주민의 소득 증대 기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42	○ 개발제한구역내 영농을 위한 지하수시설 설치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지하수 시설은 신고하고 설치해야 함 - (개선)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없이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농업활동 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43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지하수시설 설치 허용(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지하수 개발은 영농을 위한 경우만 허용 - (개선) 기존 주택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주택대지 안의 지하수 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44	○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 대비 10%이하인 경우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승인 - (개선) 건축연면적 20% 이하인 경우까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승인	관리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부담 경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 6월)	국토부
45	○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항구) - (현행) 국방·군사시설 신·증설 시 3급 이상 보안 시설만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협의로 같음 - (개선) 기존부지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국토부장관과 협의로 같음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	국방·군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 절차가 간소화되어, 적시에 시설건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16.6월)	국토부
46	○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의 주 교통수단에 철도·항공·여객만 포함 - (개선)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의 주 교통수단에 버스 추가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 활성화 및 환승편의 제고, 지역 복합개발 기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16.6월)	국토부
47	○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유예(항구)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최대 6미터) 건축 - (개선) 공장 건축 시에서는 대지 내 공지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기업활동 부담 완화	건축법시행령 (‘16.6월)	국토부
48	○ 의료시설 건축물 규제완화(항구) - (현행) 건축법상 의료시설인 병원에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의원 입점 시 용도변경 신고 필요 - (개선) 건축물 사업특성별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지정 가능	별도 용도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 불편감소	건축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49	○ 건축신고 대상 확대(항구) - (현행)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은 '작물재배사'와 유사함에도 건축허가 필요 - (개선)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연면적 400㎡ 이하) 추가	건축신고 대상 확대로 국민 불편 감소	건축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50	○ 집단급식소내 카페설치 허용(항구) - (현행) 집단급식소 내 카페영업 시 건축물 용도 변경 필요 - (개선) 후생복리를 위한 직원 전용 카페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집단급식소 내 카페 허용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에 기여	건축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51	○ 공사 중인 건축물을 임시 가설사무실 용도로 사용 허용(항구) - (현행) 조경·토목 공사시 가설건축물 운영이 필요하나 적합한 장소 부재 - (개선) 조경·토목 공사시 건축공사 완료된 건축물에 한해 임시사무실로 사용 가능	공사 시공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52	○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부담완화(항구) - (현행)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5,000㎡이상 동일 적용) * 협의서 1건 작성시, 약 1천만원의 비용과 60일 소요 - (개선)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축소	개발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 ('16.6월)	안전처
1-2 창업진입				
53	○ 관광식당업 지정 인적요건 완화(한시) - (현행) 외국음식의 경우 우리나라 해당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조리경력 3년 이상 요구 - (개선) 조리경력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외국 음식전문 관광식당(서울소재 기준,94%) 고용 활성화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16.6월)	문체부
54	○ 여행업체의 자본금 기준 완화(한시) - (현행) 일반여행업 2억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 - (개선) 현행 자본금의 1/2로 2년간 한시 완화 *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창업부담 완화로 여행업 창업 등록증가(연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16.6월)	문체부
55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한시) - (현행)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이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 - (개선)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 완화	관광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16.6월)	문체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56	○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한시 유예(한시) - (현행) 옥외광고업 등록 시 반드시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도록 명시 - (개선) 옥외광고업 등록 시 사무실 확보규정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	옥외광고업 창업부담 경감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6.6월)	행자부
57	○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입찰참여 허용(한시) - (현행) 공공기관 중소 급식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대기업 입찰참여 배제 - (개선) 상주인원 1천명 이상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대기업 참여 허용	진입규제 완화 및 역차별 해소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 (‘16.9월)	기재부
58	○ 사회적 기업 목적 실현 판단기준 완화(한시) -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의무 50%에서 한시적으로 30%로 완화(‘16년말) *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동시 제공시 20% - (개선) 한시적 완화 기간을 2년 추가 연장	신규 사회적 기업 육성률 약 20% 향상 기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16.6월)	고용부
5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 완화(한시) -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시 장비기준에 밀폐식 운반차량의 적재능력 합계를 15m ³ 이상으로 규정 - (개선) 적재능력 규정적용을 2년간 유예	수집·운반업 허가 비용 절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60	○ LH 매입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신청요건 완화(한시) - (현행) LH 매입 미분양주택 중 6월 이상 미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군부대·공공기관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16.08.22까지 공급 가능 - (개선) 추가로 ‘19.08.22까지 3년간 연장 적용	국민편의제공	LH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16.6월)	국토부
61	○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지정 요건 완화(향구) - (현행)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지정대상을 금융결제원 및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 - (개선) 업무대행기관에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 등을 추가	전문성 있는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수입인지법 시행령 (‘16.5월)	기재부
62	○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 주체 확대(향구) - (현행) 국유재산법상 감정평가 수행주체가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 (개선)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법인 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자리 창출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6월)	기재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63	○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시 감정평가 수행 주체 확대(항구) - (현행)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시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 (개선)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법인 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 (‘16.6월)	기재부
64	○ 파생상품시장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항구) - (현행) 파생상품시장의 전문투자자 요건 엄격 *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인 자 - (개선)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 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총자산 10억원 이상”	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6월)	금융위
65	○ 투자자문업자의 진입장벽 완화(항구) - (현행)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을 취급하는 투자자문업의 최저자기자본금은 5억원 - (개선)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을 5→1억원으로 완화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업 활성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16.10월)	금융위
66	○ 폐의류 폐기물처리 요건 완화(항구) - (현행) 폐의류 재활용업체가 폐의류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대행계약 체결 필요 - (개선) 폐의류도 폐지, 고철, 폐섬유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업종에 대한 시장진입 완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67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폐패각) 확대(항구) - (현행) 폐패각을 나전재료, 장식용, 어구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시장진입 요건 완화 및 시장 활성화 기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68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엄격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2억원, 사무실 25㎡, 1명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자본금 1~1.5억원, 사무실 면적 완화 또는 폐지, 중급 이상 1명 이상)	소규모 전기공사업자의 경비 절감 및 신규창업 지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16.12월)	산업부
69	○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 매입 자격기준 완화(항구) - (현행) 가공용쌀 매입자격 기준이 쌀 가공식품, 주류제조업 등 식용에 한정 - (개선) 가공용쌀 매입자격 기준을 비식품 제조업(쌀 활용 펫푸드 등)을 포함한 쌀 제품 전체로 확대	쌀 소비량 확대 및 정부양곡 재고 감축, 다양한 산업수요 발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농식품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70	○ 인삼검사원 자격기준 확대(항구) - (현행) 인삼검사원 자격기준을 이·화학 분야 전공자로 한정 - (개선) 식품·농화학 관련 자격 보유자까지 확대	관련분야 전공자의 일자리 창출 및 인삼검사원의 다양성 확보	인삼산업법 시행령 (‘16.6월)	농식품부
71	○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완화(항구) - (현행)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신청 시 고가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를 필수장비로 갖추도록 의무화 - (개선) 방사능 물질 장비 설치 기관 등과 이용 계약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개선	농산물 검정기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 규칙 (‘16.6월)	농식품부
72	○ 산양삼 재배 사용허가 요건 완화(항구) - (현행)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는 마을주민 1/2이상의 연명동의서 제출 필요/산양삼 재배 시 10ha까지 국유림 대부 - (개선) 연명동의서를 마을주민 1/3로 완화, 산림청장이 선정한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유림 대부 등 면적을 100ha 이내로 확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국유재산관리 규정 (‘16.6월)	산림청
73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상심리상담원 자격원화(항구) - (현행)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요건 : 대학 등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 (개선) 심리학 이외에 아동복지, 상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 또는 자격 추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 상담 및 일자리 확대	아동복지법 시행령 (‘16.6월)	복지부
74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가능 가족 범위 확대(항구)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제한받는 본인 가족의 범위에 민법상 가족 외 직계혈족의 형제·자매 포함 - (개선) 급여 제공 제한 대상에서 직계혈족의 형제·자매를 삭제	국민불편해소 및 가족지원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제공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6.6월)	복지부
75	○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술능력 인정 허용 (항구) - (현행)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 요건 확보에 필요한 기술능력으로 불인정 -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에 육아휴직자도 기술능력으로 인정	여성 기술인력의 사회진출 확대 및 출산장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76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시설 점검장비 구비 및 정기적인 교정검사 의무 부담 - (개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중 장비기준 삭제	소방시설관리업체 교정검사비용 부담 완화(698개소)	소방시설법 시행령 (‘16.6월)	안전처
77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완화(항구) - (현행)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을 소방분야 기술사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엄격 제한 - (개선) 응시자격을 유사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유자(건축, 전기기사 등)까지 확대	양질의 소방점검 서비스 선택 확대	소방시설법 시행령 (‘16.6월)	안전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78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횟수 확대(항구) - (현행)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2년에 1회 실시 - (개선) 1년에 1회 실시로 시험 기획 확대	수험생의 채용시 기회 보장 등으로 청년실업해소기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16.6월)	안전처
79	○ 총포 부품 제조업소 제조시설 기준 완화(항구) - (현행) 총포부품 제조업도 완성품 제조업과 같은 기준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 (개선) 총포부품 제조업자는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만 갖추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 완화	부품제조업 활성화	총포화약안전관리법 시행령 (16.6월)	경찰청
80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항구) - (현행)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으로 ①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 - (개선) 부모 동의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 17세 미만에서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및 심사장 혼잡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출입국 편의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6.6월)	법무부
81	○ 미국비자 소지 한국경유 사이판 출도착 중국인 관광객 입국비자 면제(항구) - (현행) 한국 경유하는 미국비자 소지 관 출·도착 중국인은 30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나, 사이판 출·도착 중국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개선) 미국비자 소지한 사이판 출·도착 중국인이 한국경유 시에도 30일 범위 내 무비자 입국 허용	환승관광 추가 수요 확보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유권해석 (16. 5월)	법무부
82	○ 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절차의 완화(항구) - (현행)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후에만 건강기능식품제조위탁업체에 생산 의뢰 가능 - (개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이전이라도 제조위탁업체에 생산의뢰 가능	위탁생산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시장진입 가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83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기준 개선(항구) - (현행) 식품운반업의 영업 신고 시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및 사무소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개별화물 자동차는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영업자 주소지를 업체 소재지로 간주하여 영업신고 가능	식품운반업자의 불필요한 사무소 설치비용 절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84	○ 무인 이동체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개선(항구) - (현행) 새로운 종류의 무선국 허가 시 반드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신속한 지원 불가 - (개선) 드론, 무인자동차 등 고출력 무인이동체에 대한 무선국 업무 및 무선국종 신설, 무선 분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허가체계 마련	고출력 무인이동체에 대한 무선국 허가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전파법시행령 (16. 6월)	미래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3 부담금 수수료 등 준조세				
85	○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한시) - (현행) 산업단지 조성 시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 - (개선) 수도권 산업단지도 한시적(2년간)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부담금 한시 감면으로 투자활성화	농지법시행령 ('16.6월)	농식품부
86	○ 산업단지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한시) - (현행) 준보전산지에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에 한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감면 - (개선) 수도권 산업단지도 한시적(2년)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부담금 한시 감면으로 투자활성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16.6월)	산림청
87	○ 지역개발사업구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한시) -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감면 조항 부재 - (개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 설치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 감면	낙후지역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농지법시행령 ('16.12월)	농식품부
88	○ 지역개발사업구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한시) -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감면 조항 부재 - (개선)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중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낙후지역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16.12월)	산림청
89	○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한시) - (현행) 항공기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및 형식 증명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 수수료 납부 - (개선)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 등과 관련된 민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년간 감면	경제적 부담 완화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고시 ('16.6월)	국토부
90	○ 지하수 분야 관련 수수료 유예(한시) -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지하수 관련 업을 등록시 일정금액 수수료 부과 * (개발·이용 허가) 신규 3만원·연장 1.7만원, (업등록) 신규 5만원·변경 3만원 - (개선) 6개월간 관련 수수료 면제	사업자 부담 완화 (5천2백만원)	지하수법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91	○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한시) - (현행) 승강기 운전이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조건부 합격 조치하고 일정기간 후 확인검사* 실시 * 검사수수료 2만원 부과 - (개선) 조건부 합격 후 실시하는 확인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	약 105천 개소 현장, 21억원의 수수료 면제 효과	수수료 확인검사 효율화 지침 ('16. 6월)	안전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92	○ 해양심층수 관련 사용료, 부담금 감면(한시) - (현행) 해양심층수의 취수관설치, 원수취수,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가 부과됨 *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 이용부담금 - (개선) 향후 5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부담금 전액감면	해양심층수 제조·판매업자 부담 완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해수부
93	○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감면(항구) - (현행) 낙동강분류 등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미비 - (개선) 수질측정 등 공공기관 행정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공익적 목적 이용시(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 등) 감면규정 신설	공익적 목적 사용시 경제적 부담 완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환경부
94	○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감면(항구) - (현행) 금강분류 등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미비 - (개선) 수질측정 등 공공기관 행정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공익적 목적 이용시(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 등) 감면규정 신설	공익적 목적 사용시 경제적 부담 완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환경부
95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감면(항구) - (현행) 영산강·섬진강 분류 등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 미비 - (개선) 수질측정 등 공공기관 행정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공익적 목적 이용시(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 등) 감면규정 신설	공익적 목적 사용시 경제적 부담 완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환경부
96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 연장(한시) - (현행)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 도래(‘16년말) - (개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18년말까지 2년간 한시 연장	연간 약 921개 사업장, 120억원의 경제적 부담완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12월)	환경부
97	○ 물류단지 분양시설 시설부담금 부과 제외(항구) - (현행)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준치 시설의 소유자나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 부담금을 부과 - (개선)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는 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부담금 이중부과를 해소하여 물류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12월)	국토부
98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발부담금 제외(항구) - (현행)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 시 개발이익의 25%이상 채투자과 개발 부담금 이중 부담 - (개선) 산업단지 구조고도사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업자 영업활동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 규정(훈령) (‘16.6월)	국토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부담금 제도 시행('00년) 이전에 설치된 도로 등 입지시설이 재차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도 일반사항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 - (개선) 부담금제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도로 등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고,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에 대한 부담금 요율 축소(100% → 50%) 	도로건설 및 공사 또는 농·수산업용 가설 건축물 등의 보전부담금 의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 구역법 ('16.9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일정 기준면적 이상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 부담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 도시지역 : 660㎡, 특별시·광역시외 도시지역 : 990㎡, 도시지역 외 지역 : 1,650㎡ - (개선)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조정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 등 소규모 개발사업 감면 확대 추진 	소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국토부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확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이전하는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나,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개선) 공장의 범위를 산업집적법상 공장(건물)까지 포함하여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관련 소기업 공장 부담금 면제 확대로 경영부담완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중기청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허용(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 - (개선)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분할하여 납부 가능 	부담금 납부의무자경제적 부담 완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6.6월)	해수부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해수 인수관 사용료 부과체계 마련(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인수행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관의 지름'을 기준으로 100mm, 200mm 등 100mm 단위로 규정하고 100mm이하인 경우는 월 10만원으로 동일 적용 - (개선) 관의 지름 100mm이하의 경우에는 10mm단위당 월액 1만원 적용 	양식장 등 해수 인수관 사용료 납부업체의 영업활동 부담 경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6월)	해수부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업자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 감면(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도시가스 사업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시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비영리사업만 1/2감면 - (개선)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1/10 감면 적용 	농어촌지역 가스업자 등의 사업유지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 도모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지침 확대적용	농식품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납부기한 연장(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 의무 미이행시 부과금 납부 (고지 : 매년 6월30일, 납부 : 매년 7월20일) - (개선)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납부기한을 고지는 매년 7월 30일, 납부는 매년 8월 31일로 연장 	기업부담 완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환경부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각 시도 조례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허가량, 사용량, 사용/허용량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 - (개선)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용량 기준 부과방식으로 제도 개선 	하천수 사용료 민간부담 완화	하천수 허가 기준 (‘16.10월)	국토부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 허가 수수료 폐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수수료를 징수 - (개선) 허가수수료 폐지 	국민부담 경감	하천법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폐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하천수 사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허가 수수료를 징수 - (개선) 허가수수료 폐지 	국민부담 경감	하천법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수수료 폐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수수료를 징수 - (개선) 허가수수료 폐지 	국민부담 경감	하천법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폐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 - (개선) 허가수수료 폐지 	국민부담 경감	하천법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연 2~6%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개선)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COFIX)를 적용 <p>※ 현 최고 4% → 1.66%(COFIX) 인하 효과</p>	분할납부 이자율 시중금리와 연동시켜 기업 등의 부담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6.6월)	행자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조합 간 예탁금 보험료 이중 부과 방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예금 예치시 금융사고에 대비, 예금액 일부를 상호 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이 예금의 여유분을 다른 수산업협동조합에 예탁·운영하는 경우도 보험료를 납부 하여, 보험료 이중 부과 - (개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다른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예금을 예탁하는 경우는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 	예수조합의 경영부담 경감 및 수지 개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5월)	해수부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등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 인하(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사업자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 지연 시, 소비자에게 지연기간에 연 100분의 20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 지급 - (개선)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100분의 15로 인하 (시중이자 연체이자율 수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규제의 합리성이 제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16.9월)	공정위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판매법 상 청약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 인하(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지연 시, 소비자에게 지연기간에 연 100분의 20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 지급 - (개선)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인하 (시중이자 연체이자율 수준)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경감되고 규제의 합리성이 제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16.9월)	공정위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방법 개선(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신·기보는 1년 단위로 보증료를 납부하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간동안 보증료 일시 선납 - (개선) 일시 선납 → 1년 단위 분할납부로 전환하고 카드 등 보증료 납부방법을 선택 가능 	보증료 일시납에 따른 부담 완화로 보증료 납부기업 중 약 1만여개사 활용예상	신용보증약정서 (16.5월)	중기청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체류허가 온라인 수수료 감경(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온라인에 의한 외국인 체류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신청 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감경 - (개선)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민원 감소에 따른 민원 혼잡도 완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 기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법무부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경범죄 및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현금 납부 원칙 - (개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납부 허용 	국민편의 증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16.7월)	경찰청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18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확대(항구) - (현행) 대금 직불의 효과가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대금지급 보증의무 부담 - (개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기업의 경제적·금융 부담 완화	하도급법 시행령 ('16. 10월)	공정위
119	○ 전자수입인지 환매청구기한 규정 삭제(항구) - (현행) 전자수입인지 구매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현금화하는 환매청구기한을 구입일로부터 30일로 설정 - (개선) 환매청구기한을 삭제하여 구매자가 언제든지 환매청구 가능	환매가능기간 제약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수입인지법 시행령 ('16.6월)	기재부
②-1 판로 영업활동				
120	○ 의약외품(염모제·치약제 등)에 대한 분리 허가 허용(한시) - (현행) 의약외품 팩키지 품목(제품명을 달리하는 동일한 품목)인 경우 1개의 품목허가 신고증으로 관리 - (개선) '염모제와 치약제'는 '팩키지 품목'을 제품명별로 품목 허가·신고 2년간 허용	의약외품 품목(변경) 허가·신고신청 시 민원편의 향상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16.6월)	식약처
121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제외(한시) - (현행)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 (개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편의점 등)는 영업신고의무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 및 영업부담 완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6.9월)	식약처
122	○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금지 완화(한시) - (현행)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금지 - (개선)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 2년 한시 허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영업활동 기회 보장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례품 관련 지침 ('16.5월)	식약처
123	○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시 표시의무 경감(한시) - (현행)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시 위탁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제품에 모두 표시(전부, 일부 위탁 포함) - (개선) 일부 위탁한 경우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표시생략 가능	위탁 제조업체의 표시사항 기재 부담 및 영업비용 절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분야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국내물 편성규제 한시적 완화(한시) - (현행)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40%이상 편성 의무 - (개선) 해외제작물을 구매·편성하는 외국문화 전문PP에 대해 국내물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40%→30%) 	중소 방송사의 편성자유화 및 영업부담 완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16.6월)	방통위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한시) - (현행) 공동체라디오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20%이상 의무적으로 편성 - (개선) 의무편성비율 적용을 2년간 유예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유성과 효율성 확대	방송법 시행령 (‘16.6월)	방통위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한시) - (현행)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다른 방송국(5년)과 다르게 3년으로 규정 - (개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완화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및 방송사업자의 부담 경감	전파법 시행령 (‘16.6월)	방통위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회사의 국제 수납 허용(항구) - (현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국고금 수납불가 -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도 국제 수납 허용 	신규 사업 마케팅 및 상품 개발 등 가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기재부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회사의 지방세 수납 허용(항구) - (현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지방세 수납 불가 - (개선) 금융투자회사 지방세 수납 가능 	신규 마케팅 및 이용객 편의 증진	지방재정법 시행령 (‘16.6월)	행자부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금지 개선(항구) - (현행) 국내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산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없음 - (개선)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TV 홈쇼핑 사업자 영업범위 및 국산 자동차 업계 판로 확대	보험업 감독규정 (‘16.6월)	금융위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규정 개선(항구) - (현행) 모든 지역에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 - (개선)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폐지(항구) - (현행) 전통주 제조자의 1인 1일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00병 이하로 제한 - (개선) 판매수량 제한 규정 폐지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구매자 편의 제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16.6월)	국세청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32	○ 와인 택배 허용(항구) - (현행) 백화점 등에서 대면 구매 주류 택배 금지 - (개선) 판매장을 방문하여 대면 구매한 자의 요청에 의한 와인 택배 허용	주류 구매고객 편의 증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명령위임고시('16.6월)	국세청
133	○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완화(항구) - (현행) 우체국 소핑몰, 조달청 나라장터 등 7개 사이트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 (개선) Kmall24(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중기청)까지 확대 허용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구매자 편의 제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16.6월)	국세청
134	○ 의약외품 염모제 용법·용량 자율성 확대(항구) - (현행) 의약외품 '2제형 산화형염모제'는 하나의 제1제와 하나의 제2제만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허가 - (개선) 용법·용량 이외의 모든 사항이 표준제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두 가지의 제1제를 먼저 섞은 후 하나의 제2제를 혼합·사용하는 것도 허가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 출시 가능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16.6월)	식약처
135	○ 화장품 색소 관리 자율화(항구) - (현행)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 사용가능한 원료 및 규격을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관리 - (개선)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를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불필요한 검사비 절감 및 다양한 제품 출시 가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16.6월)	식약처
136	○ '포장목'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항구) - (현행) 목류는 냉장하거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환수하면서 보존하여야 함 - (개선) 밀봉 포장한 두부, 전두부, 목류는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을 제외	목류 제품 생산자의 보존 및 유통비용 절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6.6월)	식약처
137	○ 의약외품 외용제 첨가제 사용 범위 확대(항구) - (현행) 의약외품 허가 시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외품 외용제제의 경우도 안전성·유효성 심사 실시 - (개선) 염모제와 탈모방지제에 사용하는 첨가제 중 화장품원료집(ICID) 등에 등재된 성분이 문제가 없으면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심사 자료 준비 비용 절감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16.6월)	식약처
138	○ 가공식품 표시사항 특례 범위 확대(가맹점→가맹점+직영점)(항구) - (현행) 가맹점의 경우, 가공식품에 대한 표기사항을 완화하여 표시 가능하나, 직영매장은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 - (개선) 직영매장 납품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조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가맹점과 동일하게 간단 표시 가능	직영매장 납품 표기사항에 완화로 영업활동 부담 경감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16.6월)	식약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용 의약품 첨가제 분량 기재방법 개선(항구) - (현행) 크림제, 연고제, 로션제 표시기재 시 공 정서에 있는 첨가제에 대해서만 분량을 '일정 범위'로 기재 - (개선) 제제의 점도나 맛(향)을 조정하기 위해 첨가제 투입량 변동이 있는 경우도 분량을 '일정 범위'로 기재 가능 	의약품 제조 업체 표시기재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심사 규정 ('16.6월)	식약처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표시가 어려운 껌제 의약품에 식별표시 의무 면제(항구) - (현행) 껌제를 포함한 내용고형제에는 식별표시*를 하거나, 품목별로 식별표시 면제를 인정 받아야함 * 의약품에 문자·도안 등 고유표시를 인쇄·각인 - (개선) '껌제'는 식별표시대상에서 제외 	제조업체의 영업활동 비용 및 업무부담 완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16.6월)	식약처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 적용 대상 합리화(항구) - (현행)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자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 - (개선) 체온계, 자동 전자 혈압계 등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용 제외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취급업체의 관리비용 절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항구) - (현행) 폐혈액 사용 가능 경우 : 예방접종약의 원료, 의약품 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 혈액제제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 (개선) 폐혈액 사용 가능한 경우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임상시험" 추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소요시간 및 비용 감소	혈액관리법 시행령 ('16.6월)	복지부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품 규제 폐지(항구) - (현행) 단일 경품이 2,000만 원 초과하거나, 경품 총액이 상품·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 금지 - (개선) 소비자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 폐지 	기업의 마케팅 및 소비촉진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16.6월)	공정위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 합리화(항구) - (현행) 최저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무조건 금지 - (개선)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사업자의 가격 정책 자율성 및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심사지침 ('16.6월)	공정위
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본사 현금결제 강제 완화(항구) - (현행)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원부재료 대금을 현금 결제할 것을 요구 - (개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원부재료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거부 불가 조항 신설 	가맹점주의 대금결제 방식 다양화로 영업활동 부담 경감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16.12월)	공정위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46	○ 개인정보 관련 온라인사업자 약관 예규 폐지(항구) - (현행)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에 대한 별도 예규가 공정위에 존재해 중복규제 - (개선)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공정위 예규)폐지	중복규제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해소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 (16.6월)	공정위
147	○ 지상파DMB 외주제작물 의무 편성비율 폐지(항구) -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며, 지상파DMB사업자의 경우 현재 적용 유예 중 - (개선) 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한 외주편성비율 규제 폐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상파 DMB 사업자의 기업부담 완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16.6월)	방통위
148	○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항구) - (현행)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을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것으로 한정 - (개선) 공인전자문서외 전자문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	다양한 핀테크 기술 발전 기대	전자금융 감독규정 (16.6월)	금융위
149	○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시 증자요건 완화(항구) - (현행) 저축은행이 지점 설치시 최소자본금의 100%를 증자할 필요 - (개선)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소자본금의 50%로 완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촉진 기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16.6월)	금융위
150	○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 (항구) - (현행) 신용협동조합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 (개선)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상향 * 자산기준 5억원→7억원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 : 30억원→50억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기능 활성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16.6월)	금융위
151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비율 및 산정기준(항구) - (현행) 예탁금·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80% 이상)은 타 업권에 비해 엄격 - (개선) 예탁금·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완화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 확대 기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16.6월)	금융위
152	○ 증권사의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허용(항구) - (현행) 은행 등은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나, 증권사는 겸영업무 범위에서 제외 - (개선) 증권사 겸영업무에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 허용	증권사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촉진 기대	금융투자업 규정 (16.6월)	금융위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53	○ 공장내 제품전시 판매장에 비치 가능한 제품의 범위 확대(항구) - (현행) 공장 부대시설에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전시, 판매가능 - (개선) 해당공장 생산품이 부품으로 들어간 타사의 완제품 전시도 허용	부대시설을 통한 마케팅 효과 증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16.6월)	산업부
154	○ 페로니켈슬래그 재활용 방안 확대(항구) - (현행) 철강슬래그의 일종인 페로니켈슬래그는 시멘트 원료, 골재 등 법정 용도로만 재활용이 가능 * 페로니켈슬래그에서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를 분리·정제하여 상품화 기술 개발했으나 활용 제약 - (개선) 재활용 용도에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 항목 추가	신기술을 활용한 페로니켈슬래그 재활용 확대, 1500억원 투자 예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산업부
155	○ 희유금속 함유 폐촉매의 보관기간 연장(항구) - (현행)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희유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를 60일 이내에 적정처리 해야함 - (개선) 보관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폐촉매 수입 비용 절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156	○ 전문대학원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 운영' 폐지(항구) - (현행) 전문대학원 전체 수업 중 2/3 이상을 평일 주간(19시 이전)에 운영해야 함 - (개선) 특성에 따라 주간/야간/주말 수업 자율 운영	학교여건, 특성, 학생상황, 산업 수요에 탄력 대응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교육부 지침) (16.9월)	교육부
157	○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완화(항구) -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재무건정성 요건 완화 * 종합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장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심사, 공인한 우수업체 - (현행)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사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부채비율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모든 수출업체 : 동종업종(대기업+중소기업) 평균 부채비율의 200%이하 적용 - (개선) 중소기업에 적용요건을 완화 * 중소기업 : 동종업종(중소기업) 평균 부채비율의 200%이하 적용	AEO 공인 획득 중소기업 증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16.8월)	관세청
158	○ 중견기업 인정요건 합리화 (항구) -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3년간 중소기업 인정 - (개선)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기하려는 기업을 졸업유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심사제도 도입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불편 해소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16.6월)	중기청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59	○ 방산물자 A/S비용의 방산원가 포함(항구) - (현행) 방산물자는 품질보증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설정하고, 납품이후 발생하는 품질보증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 (개선) 품질보증기간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1년으로 적용하고, 품목 특성상 장기간 품질보증 시 관련 비용 보상	방산업체 비용 부담 완화 및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계약업무의 일관성 유지	방위사업 관리규정 (‘16.6월)	방위 사업청
160	○ 착·중도금으로 구입한 자재의 수출용 우선 사용허가(항구) - (현행) 착·중도금을 재원으로 구입한 공용 부품은 타 장비에 전용하여 사용 불가 - (개선) 지급된 착·중도금을 정부에 반환 후 해당 자재를 수출용 장비에 사용 가능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16.6월)	방위 사업청
②-2 투자·설비투자				
161	○ 펀드 등을 통한 재간접투자 활성화(항구) - (현행)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 투자하는 경우 자금 조달방법이 제한 - (개선) 연기금 등의 재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공모, 주식소유제한 예외를 적용	재간접투자기구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해 일반국민에 안전한 투자처 제공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162	○ 보험업법상 대주주 범위에서 계열분리사 제외(항구) -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사도 대주주 거래와 동일하게 투자한도 및 제반 이행의무가 발생 - (개선)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집단에서 제외된 자는 보험업법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제외	계열분리사와 거래시 투자한도 확대 및 제반절차 이행 의무 완화	보험업법 시행령 (‘16.7월)	금융위
163	○ 특허담보대출 지원기업 벤처기업확인(항구) - (현행) 특허담보대출은 벤처확인대상 자금인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임에도 ‘무담보’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벤처확인 불가 - (개선) 특허담보대출을 기업이 보유한 기술성에 대한 평가만으로 벤처기업확인 기회 부여	연간 약 50여개 이상의 특허 담보대출 이용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벤처기업확인 요령(고시) (‘16.6월)	중기청
164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항구) - (현행) 창업투자회사는 특수관계인(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 (개선)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허용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6.6월)	중기청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확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 범위는 신규 주식 인수, 신규 발행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으로 한정 - (개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에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교환사채 추가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활동으로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16.6월)	중기청
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가공업자 사료제조 허용(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축산물가공업자가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 사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별도 시설을 설치 필요 - (개선) 「사료관리법」에 따른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축산물가공시설에 한하여 '사료제조업' 등록시 별도 시설 생략이 가능(2년) 	시설중복투자부담 완화	사료관리법 ('16.9월)	농식품부
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 공장의 착향탄산수 제조 허용(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존 먹는샘물 공장에서는 탄산주입 설비를 설치하여 탄산수만 제조가 가능하나, 착향탄산수는 불허 - (개선) 탄산수에 착향 첨가를 허용하여 착향 탄산수도 제조 허용 	먹는물 생산업체의 설비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16.12월)	환경부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실외후사경 장착관련 규제개선(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현행 규정상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하는 '미러리스 시스템' 도입 불가 - (개선)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사이드미러 대체 카메라를 허용하도록 안전기준 개정 	자동차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부품 산업 활성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6.6월)	국토부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선(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항목에 추진 장치를 'CNG, 충전식 전기저상버스, 디젤'으로 제한 - (개선) 표준모델의 기준항목에 추진장치 항목 삭제 	다양한 유형의 저상버스 모델 공급 가능	저상버스의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16.6월)	국토부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대상 무선국 확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이동국·육상이동국용 휴대용 무선기기 신고·개설은 육상국·기지국·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경우만 가능 - (개선) 적합성평가를 받은 휴대용 무선기기는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개설 가능 무선국'에 포함 	이동국·육상이동국용 휴대용 무선기기시설자의 규제부담 완화	전파법시행령 ('16.6월)	미래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보관시설 기준 완화(항구) - (현행) 폐기물 재활용업은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함 - (개선) 폐기물처리업자 중 곤충(동애등애)을 사육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p>동애등애 분변토 생산시설 설치·운영자의 사업 초기비용절감</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6월)</p>	환경부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공동이용 허용(항구) - (현행) 동일법인인 여러 사업장이 동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 차량을 고정 등록하고 공동 사용은 금지 - (개선) 동일법인인 여러 사업장이 동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수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사용 허용 	<p>폐기물 재활용업소의 차량중복 구입 및 운영으로 인한 부담완화</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6월)</p>	환경부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폐기물 위탁처리 규제 완화(항구) - (현행) 1일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포함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대상 - (개선) 유치원의 경우 급식인원 기준을 100명→200명 이상으로 완화 	<p>급식인원 200명 미만인 유치원 운영자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절감</p>	<p>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6.6월)</p>	환경부

③-1 인력 (고용 및 교육)

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항구) - (현행)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1인 기업에 한해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개선) 제조판매업자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이 가능한 경우를 10인 이하의 기업까지로 확대 	<p>중소기업의 의무고용 부담 완화로 경쟁력 제고</p>	<p>화장품법 시행규칙 ('16.6월)</p>	식약처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용 원료식품 제조 시 제조관리자 규제 완화(한시) - (현행)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의약품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약사를 제조관리자 의무 고용 - (개선)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의약품 첨가제인 '백당'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4년제 이상의 이공계학과 졸업자로 2년간 확대 	<p>기업의 고용부담 경감(연간 8.5억원)</p>	<p>약사법 ('16.9월)</p>	식약처
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항구) - (현행)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 - (개선)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의사,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자*로 확대 <p>* 기술자 : 생화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수의학 전공자 등</p>	<p>영업자의 고용비용 경감</p>	<p>약사법 ('16.9월)</p>	식약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의무 부담 완화(항구) - (현행)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은 소독제 제조업체의 경우도 안전관리책임자(약사) 의무 고용 - (개선) 소독제 제조업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관련 기업의 고용부담 연간 10억원 경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6.6월)	식약처
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확대(항구) - (현행)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학력, 경력 등 일정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지정 - (개선) 품질책임자 자격요건(학력·경력) 확대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책임자 인력 확보 용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유예(한시) - (현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자, 하수·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 - (개선) ‘19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18.1.1.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19.1.1. 	중소규모 사업주 부담완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16.10월)	고용부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항구)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으로 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위험물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 요구 - (개선) 1년 종사경력을 자격기준에서 제외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대리자 고용부담 감소(주유소 13,000여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안전처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개선(항구) - (현행)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시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 (개선) 운영자 참가자 8명당 1명으로 개선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활성화로 관련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칙 (‘16.6월)	안전처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 업체 종업원 파견요건 완화(항구) - (현행)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하는 업체가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지닌 1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하여 허용 - (개선) ‘1년 이상 경력’ 요건을 삭제 	중소납품·입점 업체의 영업활동 촉진과 부담 완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16.6월)	공정위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시 2인 이상 국가기술자격자(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확보 필요 - (개선) 전문정비사업자 기술인력 중 1명은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정비·검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도 인정 	채용비용 절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6.6월)	환경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이국가유공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자치단체·국·공립학교: 15% * 200인 이상(비제조업 20인 이상)업체 업종별로 3~8% * 사립학교 10% - (개선) 3급 이상 중상이자 고용 시 고용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인원으로 산정 	중상이국가유공자 고용촉진 및 기업 부담 완화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자법 5·18 민주 유공자법 (‘16.9월)	보훈처
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건강검진 재검기한 연장(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사업주는 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개선) 건강검진 재검기한을 건강검진기본법의 재검기준과 동일하게 10일에서 30일로 연장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검진 시행 부담이 완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16.6월)	고용부
1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사·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유예(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 경매사, 중도매인으로 신규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경매사·중도매인 등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1년 6개월로 연장(2년) 	도매시장 종사자의 부담 완화 및 도매시장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6월)	농식품부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 완화(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인노무사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현장 연수교육을 받아야 개업 가능 - (개선) 연수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2년간 한시적으로 단축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자(매년250여명)의 개업 및 취업기간의 단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16.6월)	고용부
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노무사 지정교육기관 강의실 기준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어야 공인노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가능 - (개선) 강의실 수용 인원 기준 폐지 	교육능력이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가능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16.6월)	고용부
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의무 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 필요 - (개선) 운반자 및 알선판매업의 경우 교육 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기업 부담 완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전문공사업 종사 기술인력 교육 의무 폐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환경전문공사업체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최초 고용된 날 등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의무화 - (개선) 환경전문공사업체 교육 의무 폐지 	기업 및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91	○ 실내공기질 법정교육 면제(항구) - (현행)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공기질 법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개선)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한 자, 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은 법정교육 면제	교육비용 절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6.12월)	환경부
192	○ 장례지도사 현장실습기관 제한 기준 완화(항구) - (현행) 특·광역시 장례식장 현장실습 기관 기준 : 월평균 시신안치 건수 20건 이상 장례식장 - (개선) 월평균 시신안치건수 10건 내외 장례식장으로 기준 완화(시·군·구와 동일한 기준)	특·광역시의 장례지도사 현장실습기관 원활한 확보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 지침 변경 (16.6월)	복지부
193	○ 안전관리자 교육 편의 증진(항구)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집합교육으로만 실시 - (개선)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도록 실시근거 마련	안전관리자편의성 제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안전처
194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기준 개선(항구) - (현행) 교육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 - (개선) 안전교육 대상자가 인명구조 자격증 소유자임을 고려,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6시간 →3시간) 조정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부담 완화, 안전교육 효과 제고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16.6월)	안전처
19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지정기준으로 교육장 시설을 요구하여 임차시설 활용 불가능 - (개선) 지정기준 중 시설규모 확보를 삭제하여 각 지역의 임차시설을 활용 가능	안전관리지원기관 교육장소의 실효적 운영과 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접근성에 따른 만족도 향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안전처
196	○ 식품위생교육 방식 다양화(항구) - (현행) 식품영업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1회(3시간) 의무 부여 - (개선) 식품위생법 상 우수·모범업소로 지정 받을 경우 2년간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고, HACCP인증 업체는 교육을 항구적으로 면제	식품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 완화	식품위생법 (16.9월)	식약처
197	○ 식품위생교육 면제 기준 개선(항구) - (현행) 기존 식품영업자가 업종을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가능 - (개선) 업종 전환하기 전 1년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교육으로 신규영업자 교육으로 같음 * 연초에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교육 미이수로 업종 전환을 하지 못하는 사례 개선	영업활동 기회 보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면제대상 확대(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 종사 경력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면제 대상이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 제외 - (개선)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면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부담 해소	경비업법 시행령 (16. 6월)	경찰청
3-2 기술기준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 품질기준 강화유예(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물질 함량을 무게기준 2%로 강화할 예정이나 한시적으로 3%로 완화(~'16.12) - (개선) 고철의 품질기준 강화 규정에 대한 유예를 '16년에서 '18.12월까지 2년 연장 	고철 재활용업자의 부담 경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시행 유예기간 연장(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이 '17. 1. 1일자로 시행 - (개선) 시행일을 '18.1.1일자로 1년 유예 	개선된 제도의 효율적 현장 적용 및 영업자 부담 완화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고시) (16.6월)	식약처
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기준 적용 유예기간 연장(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표시기준이 '17. 2. 4일자로 시행 - (개선) 표시기준 적용시점을 6개월 추가 연장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준비기간 부여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 시기준 고시 (16.11월)	식약처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리튬이차전지 안전확인 대상 한시유예(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후 통관 및 출고가 가능 - (개선)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안전 확인 대상적용을 8개월 유예('16년말) 	기업 인증비용 절감	전기용품안전 관리운용요령 (16.5월)	산업부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내 실험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외(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실험, 연구목적 등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내 실험실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 (개선)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연구용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 가능 	연구개발 촉진 및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 해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04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량 감경(항구) - (현행)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제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에 기여하는 자 인센티브 부여 - (개선) 폐전기·폐전자제품으로 만든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재활용 의무량 감경	기업 부담 완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환경부
205	○ 가연성가스의 건축물 내 보관 허용(항구) - (현행) 가연성가스는 건축물내 보관이 불가하여 현재 지붕이 있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 - (개선) 실린더캐비닛에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건축물 내 보관 허용	사업자 부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산업부
206	○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항구) - (현행)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이 1개라도 신설·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 되면 저장소 변경 허가 절차 필요 - (개선)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한 변경허가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	반도체 사업자 매출 손실 절감 및 인허가 비용과 기간 감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산업부
207	○ 안전점검원 선임 시 배관길이 기준 완화(항구) - (현행) 하나의 도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간 거리가 3m 미만인 경우'만 하나의 배관으로 인정 - (개선) 배관 간 거리(3m) 기준 삭제	도시가스사의 안전점검원 인력 운영비용 절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16.6월)	산업부
208	○ 사업장 통로의 장애물 설치 기준 완화(항구) - (현행) 사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사업장 내 통로설치 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 장애물 설치 불가 - (개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m이내 장애물시설 설치 가능	사업장의 작업효율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6월)	고용부
209	○ 창고 등의 소방경보시설 설치 완화(항구) - (현행)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등까지 소방경보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을 폭넓게 규정 - (개선) 화재 위험성이 적은 일정기준(사람 비거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보관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경보시설 의무설치 대상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총 15만개소 중 4만개소가 혜택 수혜 가능 * 비상경보발신기 1개당 100만원 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16.6월)	안전처
210	○ 주유취급소 내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술 기준 합리화(항구) - (현행) 주유취급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기 및 전력 분배·차단 장치는 방폭성능 구비 의무 - (개선) 충전기기 등과 주유설비 간 일정 거리 유지 시 방폭 성능 구비 의무 면제	전기자동차 보급의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사업 및 부대사업 활성화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안전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11	○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 기술기준 합리화(항구) - (현행) 대학교 등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일반 사업장 기술기준 적용 - (개선)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일반취급소의 특례(완화기준)로 마련	화학실험실 설치의 건축비용 감소 및 운용 편의 제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안전처
212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용되는 국제기준 범위 확대(항구) - (현행) 국제해상위험물과 달리, 항공으로 수입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 운반기준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없음 - (개선) 국제항공위험물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국제항공위험물과 국제해상위험물의 규제 형평성 제고, 국제항공물류의 편의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 6월)	안전처
213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기술기준 합리화(항구) - (현행)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이 스케줄 80으로 규정, 소화약제의 상한 규정 - (개선) 일반인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는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을 스케줄 40으로 완화하고 소화약제의 상한 삭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설치의 비용감소 및 설계프로그램 변경 비용 감소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6. 6월)	안전처
214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제개선(항구) - (현행)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용접 등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등), 비상경보 등 설치 - (개선) 간이소화장치 설치 반경 확대(5m 간격 →25m 간격)	소화기구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부담 완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16.6월)	안전처
3-3 행정부담				
215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 완화(한시) - (현행)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 - (개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제출하도록 2년간 한시 허용	기업행정협조비용 절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6.10월)	관세청
216	○ 연구시험용 자동차 부품 관세감면 신고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부분 허용(한시) - (현행) 관세감면 수입신고건에 대한 첨부서류는 전자제출 불허,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 - (개선) 연구시험용 자동차 부품감면 대상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부분 허용(한시 1년)	기업행정협조비용 절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6.9월)	관세청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17	○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변경신고 의무 유예(한시) - (현행) 외국기업 등이 국내지사 설치신고 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신고 - (개선) 변경신고 의무를 1년간 유예하되,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보고	국내지사가 신고한 내용(업무범위 등) 신속 변경 가능	외국환 거래규정 ('16.9월)	기재부
218	○ 관세사회 총회 관련 의무 면제(한시) - (현행) 관세사회 총회 개최 전 관세청장에 통지 및 총회 종료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의무 부여 - (개선) 관세청장에 대한 관세사 총회 개최 사전통지 및 의결 사항 사후보고 의무 한시적 유예(1년)	관세사회 업무부담 경감	관세사법 시행령 ('16.6월)	기재부
219	○ 세무사회 총회 관련 의무 면제(한시) - (현행) 세무사회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 - (개선) 세무사회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 보고 의무 면제(1년)	세무사회 업무부담 경감	세무사법 시행령 ('16.6월)	기재부
220	○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유예(한시) - (현행) 건설기계를 수출할소 한 경우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 - (개선) 수출업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건설기계 수출업자 행정부담 완화	건설기계 관리법 ('16.12월)	국토부
221	○ 시추조사장비의 한시적 건설기계 등록(한시) - (현행) 오래된 시추조사장비의 경우 등록에 필요한 출처 증빙서류 확보 불가 - (개선) 오래된 시추기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등에서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등록지원필증)' 발급 추진 (2년)	오래된 시추조사장비 소유자에 대한 권리 보장 및 불편 해소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222	○ 세무사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 폐지(항구) - (현행) 세무사는 장부 작성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멸실·훼손시 국세청장에게 신고 의무 - (개선) 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 폐지	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보존에 따른 부담 완화	세무사법 시행령 ('16.6월)	기재부
223	○ 세무사회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 폐지(항구) - (현행) 세무사회를 서울시에 설치하도록 한정 - (개선) 서울시 이외에 장소에도 설치 가능	세무사회 자율성 보장	세무사법 시행령 ('16.6월)	기재부
224	○ 금융기관의 중복보고 의무 폐지(항구) - (현행) 금융사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청(금융위)에 이를 재차 보고 - (개선) 금융기관의 중복보고 의무 폐지	이중보고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16.6월)	금융위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25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보고 폐지(항구) -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전산·법무·회계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규정 - (개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수행시 금감원에 보고하는 절차 삭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절차 효율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6.6월)	금융위
226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항구) - (현행)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명 서류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함 - (개선)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자 간 계약서류도 가입 증명 서류로 인정	통신판매업자의 신고편의 제고로 영입부담 감소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16.9월)	공정위
227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완화(항구) -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금융보험사 제외)는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변동현황, 경영활동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 - (개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내용 삭제	대기업집단 소속 1,488개 비상장사의 공시부담 완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16.6월)	공정위
228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보절차 개선(항구) - (현행) 가맹본부가 정보 공개서 변경 등록시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의무 및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존재 - (개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 및 제공의무 삭제	가맹본부의 업무부담 경감	가맹사업법 시행령 (16.9월)	공정위
229	○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대한 제출 자료의무 완화(항구) - (현행)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조세채납처분, 과태로 처분 등을 받거나, 범죄사실이나 법 위반사실이 발생 시 통지 의무 부여 - (개선)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불필요한 통지 의무 삭제	기업의 자료제출 불편 해소	월드클래스 300 운영요령(고시) (16.6월)	중기청
230	○ 기술사사무소 장부비치 의무 폐지(항구) - (현행) 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 직무수행일지, 직무보조자 명부, 설계·보고서 수급대장, 공사감리 기록대장 등 관련 장부 비치 의무 - (개선) 기술사사무소 장부비치 의무 폐지	기술사사무소 장부관리업무 수행 인건비 절감	기술사법 시행규칙 (16. 6월)	미래부
231	○ 지하수 관련 사업자 변경등록 규제완화 (항구) - (현행)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정화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모두 변경신고 대상 - (개선) 변경등록사항 중 임원 변경내용을 삭제	사업자 편익 증대	지하수법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32	○ 건설기계 등록서류 확대(항구) - (현행) 건설기계 등록 시 건설기계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수입면장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건설기계 제작증 분실 시 건설기계 등록 불가 - (개선) 서류 분실 시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대체 가능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233	○ 지리적 표시 등록시 중복서류 제출부담 완화(항구) - (현행) 지리적 표시 등록과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신청시 동일서류 중복 제출 - (개선) 동일한 서류는 어느 한 쪽으로 제출된 경우 상호 인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농식품부
234	○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항구) - (현행)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시 생산현황정보 기입, 폐업지원금 지급 요청시 작물별 전환 계획 제출 - (개선)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시 생산현황 삭제 및 폐업지원금 지급 요청시 양식 간소화	제출서류 간소화로 농업인 편의 도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6.6월)	농식품부
235	○ 영세 비료 생산업자를 위한 등록신청 완화(항구) - (현행) 비료생산업 등록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재배시험성적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 - (개선) 등록신청 서류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입증서류'와 '공장등록증명서'는 택 1하여 제출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농식품부
236	○ 폐수재이용계획의 제출의무 폐지(항구) - (현행) 산업단지 입주자 중 1~3종 사업장 설치·운영자(하·폐수종말처리시설 이용자 제외) 및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폐수재이용계획 수립·시행 - (개선) '폐수의 재이용 계획 수립' 의무 삭제	기업 부담 경감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237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유효기간 연장(항구) - (현행)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품질검사서를 제출해야함 - (개선)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의 유효기간을 수입·제조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완화	기업활동부담완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6월)	환경부
238	○ 기본부과금 산정 시 제출서류 간소화(항구) - (현행)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사업자는 매 반기마다 지자체에 관련 자료 제출(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 (개선) 제출 자료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기록·보존한 사항은 면제	기업의 행정처리 불편 해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 연차보고 대상 확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연차보고로 갈음하는 첨가제의 공정서 간 규격 변경이 제한적이고, 직접의 용기·포장 변경은 연차보고 대상에서 제외 - (개선) 연차보고 대상 첨가제의 공정서 간 규격 변경을 확대하고 직접의 용기·포장 변경도 연차보고 대상에 포함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품목변경 비용 절감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16.6월)	식약처
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계획 보고제 폐지(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의약품제조업자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하려는 경우도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 (개선) 자발적인 안전성 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 의무 폐지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업계 부담 경감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고시) ('16.6월)	식약처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건강진단결과서) 삭제(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영업을 허가·신고·등록하려는 자는 규정된 영업 시설을 갖추고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만 신고 가능 - (개선)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생략 	영업 신고에 따른 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 해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험용 X-ray 발생장치 수입규제 개선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X-ray 수입을 위해서는 판매허가와 설계승인이 필요하며, 설계승인 시 설계도면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허가 처리기간(20일), 심사 부담금(170만원) - (개선) 연구·시험용으로 X-ray 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는 판매허가 면제, 설계도면 제출에 갈음하여 현장검사 시 안전성을 사후 점검 	사업자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기간 단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16.10월)	원안위
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통신사업 외국 뉴스통신사 국내지사 등 설치 규제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 설치 시 지사장 또는 지국장 의 이력서를 제출 - (개선) 지국장 이력서 제출의무 조항 폐지 	기업활동부담완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문체부
2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동 기간 만료 시 신규 허가와 동일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필요 - (개선) 재허가 신청시에는 시설물이나 구조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시·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기존에 제출된 서류로 갈음 	재신청시 서류 제출 간소화로 양식어업인의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정 ('16.6월)	해수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진술서 작성방법 개선(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신원조사 대상자가 작성·제출하는 신원진술서에는 본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물사진(반명합판) 증명사진 부착 의무화 - (개선) 신원진술서 첨부 사진에 인화된 증명사진(실물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허용 	年 30만건의 경찰신원조사 비용·시간 절감	경찰신원조사 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16.10월)	경찰청
3]-4 절차간소화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무선국 허가·검사 간소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검사체계가 일반 무선국과 같이 복잡 - (개선) 아마추어무선국에 대한 허가신청 및 무선국 허가증 기재사항 항목을 축소하고 아마추어무선국의 검사생략 범위를 확대 	국내 국내 아마추어 무선국 및 기술연구 활성화	전과법시행령 (16. 6월)	미래부
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용 방사선발생장치 수입규제 개선(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방사선발생장치 수입하는 자는 판매허가 및 설계승인이, 사용하는 자는 사용허가 필요 - (개선) R&D용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시 판매허가를 면제하고, 인허가 절차 단순화해 기간 단축 	사업자 행정부담 완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16.10월)	원안위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경우 제작사의 형식증명승인 처리기한을 30일→25일로 단축 	영업활동 촉진	항공법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 항공여객 운임 신고처리기간 단축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신고제 노선의 행정처리기간 7일 - (개선) 5일로 단축 	영업비용 절감 및 국내 항공시장의 성숙과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항공법 시행규칙 (16.6월)	국토부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업용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고 필요 - (개선) 연장신고 없이 자동 연장 	농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건축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간접조명 활용 가로형간판 일부 신고 제외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LED 활용 간접조명 광고물은 유해성이 낮음에도 신고하여 표시해야함 - (개선) LED 등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간접조명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저층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6.7월)	행자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52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폐지 또는 연장(항구) - (현행)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정기적인 연장 신고를 해야 함 - (개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또는 폐지	민원인 행정부담 감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6.6월)	행자부
253	○ 평생교육시설의 타지역 이전시 폐쇄신고 개선(항구) - (현행)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위치변경으로 관할 교육감(장)이 변경될 경우 폐쇄 후 신규 신고 - (개선) 평생교육시설의 이전으로 관할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등록·신고만 하도록 개선	지역교육 여건 변화에 평생교육시설의 대응력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16.9월)	교육부
25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완화(항구) - (현행)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가 변경신고 대상 - (개선) 신고용량 대비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업체 불편 및 행정력 낭비 예방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255	○ 배출가스저감장치 검사기간 연장 기한 개선(항구) - (현행) 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기간 연장기간은 ‘검사완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 - (개선) 검사기간 연장 기한을 ‘검사기간 만료후 40일 이내’로 10일 연장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제공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16.6월)	환경부
256	○ 공회전 제한장치인증 변경신청 기한 개선(항구) - (현행)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하는 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개선) 변경신청 기한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사업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공회전 제한 장치의 성능 기준·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6.6월)	환경부
257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간소화(항구) - (현행) 가맹본부가 공정위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불가 - (개선)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 절차 간소화 및 행정부담 경감	가맹사업법 시행령 (‘16.9월)	공정위
258	○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변경 등록의무 완화(항구) - (현행)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학총장, 병원장 등)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 (개선) 설치자 변경등록을 변경보고로 개선	기업의 행정처리 비용 절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11월)	식약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등록절차 개선(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자는 해당 성분의 명칭 및 제조소를 동시에 등록해야 함 - (개선) 원료의약품과 제조소 시설을 각각 등록 가능하게 하여 동일 제조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원료 등록시 제조소에 대한 중복심사 면제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자의 등록기간 단축(4주) *심사기간 : 17주 (제조소 현장심사 시) → 13주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16.6월)	식약처
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허가 시 독성시험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물질 함유제제'에 대한 반복투여독성자료 → 면역독성 및 국소독성 자료로 대체 가능한 경우 명시 - '새로운 제형'에 대한 효능·효과 입증자료 → 제제의 특성에 따라 면제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수재 성분에 대한 복합제 독성자료 → 독성자료 면제 가능 	의약품 심사 자료 비용 절감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16.6월)	식약처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재평가 후속조치 기간 차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변경을 명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업체에서는 1개월 이내에 허가변경 조치 의무 - (개선) 허가변경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토록 완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업체 부담 완화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16.6월)	식약처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수입·장착하는 타이어의 효율등급 신고 간소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매년 1회(1.31일) 장착타이어 수입·판매실적과 효율등급 보고서 중복 작성 - (개선) 수입·판매실적과 효율등급 보고서 양식을 통합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16.6월)	산업부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간 완화(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700MW 이상 발전소는 천연가스 수급 예정일 5년전에, 100~700MW 발전소는 3년전까지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을 신청해야 함 - (개선)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간을 발전소 시설 용량 기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급예정일로부터 3년전에 신청 	발전사업자 부담 완화 및 발전 인프라 구축여건 개선	천연가스 공급 규정 (한국가스공사) ('16.6월)	산업부
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시설 기술검토신청서 작성규칙 완화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여러 곳의 허가지역이 하나의 허가증으로 관리가 됨에도 허가지역 일부를 철거(폐지) 하는 경우 기술검토신청서를 작성 필요 - (개선) 허가받은 고압가스 시설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기술검토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 기술검토 수수료(건당 평균 18만원) 및 처리기간(15일) 절감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산업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기자재 병행수입자 적합성평가 인증 간소화 (항구) - (현행) 전과법상 인증획득 신청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영세 병행수입자가 사실상 제출 불가능한 자료 제출의무 존재 - (개선)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는 병행수입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병행수입 활성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16. 6월)	미래부
4-1 감사의무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검사 면제(한시) - (현행)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 하역금 측정하게 해야 함 - (개선) 지도점검(오염도검사)을 받은 시설에 한하여 한시적(2년)으로 그 해 또는 다음 해 자가측정 면제 	연간 자가측정 비용부담 18억원 완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6.12월)	환경부
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유예(한시) - (현행)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및 기간 갱신 시 추가로 연1회 현장 조사하도록 규정 - (개선) 현장조사를 1년간 한시 유예 	기업 행정 협조 비용 절감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16.6월)	관세청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누출 점검 대상 축소(항구) - (현행) 비산누출점검 난해시설의 비율이 총 비산누출시설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할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10%범위까지 추가로 인정 - (개선) 난해시설의 제외 한계를 30%로 하되 환경청과 협의하여 10% 이상도 확대 가능 	점검비용 및 시설개선 비용 감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12월)	환경부
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완화(항구) - (현행)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사용을 폐쇄·종료 또는 교체 전 실시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이상의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누출검사를 받아야함 - (개선) 폐쇄·종료 또는 교체되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면제 	연간 누출검사 비용절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6.6월)	환경부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정기검사 완화(항구) - (현행)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신고를 한 자는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함 - (개선) 사업장내 점검대상 비산누출시설수 조정 	업체별 점검비용 절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10월)	환경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용제품 KS인증 및 KC인증의 공장심사 상호인정(항구) - (현행)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KS인증 및 KC 인증 정기검사 시 유사한 공장심사가 중복 - (개선) KS인증 및 KC인증의 정기검사 시 공장심사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상호 인정 	심사비용 절감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16.6월)	환경부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완화(항구) - (현행) 성형 일반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길이 기준은 100mm 이하로 규정 - (개선) 사용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100mm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 	기술개발 촉진 및 제작자 및 사용자 편의 증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연료제품 제조·보관시설 검사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고품연료제품의 보관과정에서 화재, 품질 변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창고 내 칸막이 설치, 상중하부 온도계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 - (개선) 고품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중 보관시설의 검사기준 일부 완화 	업계 불편 최소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2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측정의무 면제 적용대상 확대(항구) -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은 법에서 정한 권고기준 5개 항목에 대해 2년에 1회 자가측정을 실시 - (개선) 오존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물질의 측정의무 면제 	자가측정 부담 비용 절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6.12월)	환경부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에 따른 부담 완화(항구) - (현행)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같은 해에 받아야 함 - (개선)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검사자가 희망시 검사 시기 조절 가능 	업소당 업무부담 비용 절감	가스3법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16.6월)	산업부
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방식 도입(항구) - (현행) 도시가스배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방식으로 방사선투과검사(RT*)만 허용 - (개선) 위상배열초음파 (PAUT*)검사 추가 *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일반도시가스사 및 가스공사의 약 166.8억원의 기업 비용 절감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 시험 기준) (‘16.6월)	산업부
2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에너지진단 주기 면제(항구) - (현행)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매 5년) 완화 등 인센티브 부재 - (개선)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 성과를 검증받은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진단 주기 1회 (5년) 면제 	우수사업자 진단주기 면제로 사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16.9월)	산업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C(시스템에어컨) 모듈모델 신기술(NET) 인증 취득 간소화(항구) - (현행)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심사시 제품의 개별 모델별로 평가 및 모델별 공인시험성적서 요구 - (개선)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시 평가대상을 '개별 모델→대표모델'로 완화 	적용제품확인서 심사 수수료절감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16.6월)	산업부
2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국의 중복검사 부담 완화(항구) - (현행)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의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은 무선국도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다시 받음 - (개선)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변경검사일로 부터 재 산정 	시설자 부담 완화 및 검사 행정비용 절감	전파법시행령 ('16.6월)	미래부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검사기준 개선(항구) - (현행) 승강기 검사, 정밀안전검사기준은 한국 산업표준(KS)에 따르도록 규정 - (개선) 신기술 승강기 등 승강기 기술을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성능형 승강기 검사기준' 도입 	승강기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6.6월)	안전처
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공정 위탁제조 의약품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중복평가 개선(항구) - (현행) 동일한 품목으로 이미 허가받은 제조소에 해당품목과 모든 공정을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경우도 위탁사가 중복으로 GMP 평가를 받음 - (개선) 위탁받은 업체의 GMP 적합판정서 제출 시 의약품의 GMP 평가 면제 	GMP 중복평가 개선으로 위탁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절감 및 시장진입 기간 단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6.6월)	식약처
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품 GMP 현장실사 생략기간 연장(항구) - (현행) 품목(변경)허가前 당해 품목별 GMP실시 상황 평가 시 현장실사 이력이 있는 작업소에 대해 1~2년이내 실사생략(서류평가) * (실사비용) 건당 850만원(해외) - (개선) 3년 이내 실사생략(서류평가) 	사업자 부담 완화 관련 실사비용 부담 완화	바이오의약품 허가 전 제조소 GMP 실태조사 수행지침 ('16.6월)	식약처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항구) - (현행)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식품유형별로 9개월 또는 3개월마다 1회씩 자가품질검사 실시 - (개선)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면서 HACCP 정기평가 결과 95% 이상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경감으로 투자활력 제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10월)	식약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4-2 제재처분 완화				
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감경조항 신설(한시)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규정만 존재 - (개선)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2년간 한시 감경 	사업자에게 과징금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반행위 억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7월)	방통위
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특허취소 기준 완화(한시) - (현행)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1년 이상 물품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 특허 취소 - (개선) 취소사유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 	영업부진 등으로 일정기간 보세화물 반입이 없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부담 경감	관세법 (16.9월)	기재부
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한시) - (현행) 단전요건 :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 (한전 전기공급약관) - (개선)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를 한시적으로 2년간 탄력적으로 조정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기사용권리를 보장하고 회생기회 지원	공문 조치 (16.5월)	산업부
2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 (한시) - (현행) 도시가스 공급 중단요건 : 기한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시·도 도시가스공급규정) - (개선) 중소기업에서 일시적 자금위기로 가스요금 연체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하도록 한시적으로 1년간 조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공문 조치 (16.5월)	산업부
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처분기준 완화(항구) - (현행)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개별처분기준이 업종 간 차이 - (개선)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로 처분기준 완화 	등록취소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부담 경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6.6월)	해수부
2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수산물 검역시 휴대품 미신고 과태료 감면(항구) - (현행)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유사 검역물품(축산, 과일)에 비해 과중 - (개선) 휴대품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액을 축산물 등 유사법령 수준으로 완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수준동일하게 적용하여 유사업무간 형평성 제고	수산물병관리법 시행령 (16.6월)	해수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금액 개선(항구) - (현행) 공유수면 매립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자료제출·보고 위반 또는 검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개선) 과태료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경감 	경미한 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담 완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해수부
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관리원 업무정지 완화(항구) - (현행) 항로표지관리원이 허가조건 미이행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4개월 - (개선)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1차 위반 업무정지 4개월을 3개월로 완화 	타법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정지 수준 완화하여 영세 근로자의 부담 완화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16.6월)	해수부
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항구) - (현행) 과징금 규모가 상당한 경우도 일시 납부 - (개선) 과징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업체 부담 감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월)	농식품부
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합리화(항구) - (현행)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신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 (개선) 원료·연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자기 측정값이 불검출로 나와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 벌칙 적용 제외 	사업장 운영 안정성 제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6월)	환경부
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제재규정 완화(항구) - (현행) 범위반사업자에게 관련 납품대금·임대료의 20~60%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부과 * 관련 납품대금·임대료 × 부과기준율 - (개선) 과징금 산정 시 범위반금액 비율*을 추가하여 과징금 수준을 합리화 * 관련 납품대금·임대료 × 범위반금액비율(범위반금액/ 관련 납품대금·임대료)× 부과기준율 	과징금 부담 완화로 유통업체의 영업활동 촉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16. 6월)	공정위
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항목의 통합 및 개선(항구) - (현행) 범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2차례에 걸쳐 과징금 최종 액수를 조정하고 있으나, 1차 및 2차 조정 항목에 중복내용 존재 * 1차 :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위반시 20~50% 가중 * 2차 : 3년 이내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범위반시 5~20% 가중 - (개선) 2차 조정 항목인 ‘동일유형 범위반시 가중’을 1차 조정 항목인 ‘반복 범위반시 가중’으로 통합 	불필요한 중복 부과를 제한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및 업계 부담 완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16.9월)	공정위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29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부담 완화(항구) -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개선) 신규 사업장 및 영세 사업장의 경우 1차로 15일간의 시정기회 부여	영세사업장 부담 감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6월)	고용부
297	○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 기한 연장(항구) - (현행)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 가능 - (개선) 건축허가 후 착수 가능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16.6월)	국토부
298	○ 비의도적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항구) - (현행)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의 행정처분이 부과 - (개선)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경우는 행정처분을 경감	행정처분 완화로 영업자 생계 및 영업권 보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299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항구) - (현행)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납부 - (개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16.6월)	식약처
300	○ 화장품 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완화(항구) - (현행) 화장품 내용량 부적합의 경우 일률적으로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 (개선) 내용량 표시 기준량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양형을 차등 적용 * 20%이상 부족 : 품목제조정지 2개월, 10-20% 부족 : 1개월, 10% 미만 부족 : 시정명령	기업체의 행정처분 부담 완화 및 합리적인 행정처분 시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16.6월)	식약처
301	○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완화(항구) - (현행) 가격표시 의무 위반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업자 행정처분 차등 적용 * 식품접객업 : 시정명령(1차), 영업정지 7일(2차), 영업정지 15일(3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격표시 의무 위반 : 영업정지 7일(1차), 영업정지 15일(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접객업과 동일하게 적용·완화	행정처분 완화로 영업자 부담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10월)	식약처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302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대장균 검출 기준 완화(항구) - (현행) 음성 관리 - (개선) g당 10이하로 관리	조리식품의 폐기 비용 감소, 행정처분 부담 완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6.6월)	식약처
303	○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완화(항구) - '안전시설 등의 공사 종료 신고' 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적 조정 - (현행)300만원 → (개정)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엄정한 법집행 가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6월)	안전처

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51건)



목 차



1. 무인이동체 분과

- 가. 무인기 (과제 1-14번) 53
- 나. 자율주행차 (과제 15-24번) 56

2. ICT 융합 분과

- 가. 클라우드 I (과제 25-28번) 59
- 나. 사물인터넷 (과제 29-38번) 60
- 다. 클라우드 II (과제 39-47번) 62
- 라. 빅데이터 (과제 48-65번) 64

3. 바이오헬스 분과

- 가. 정밀재생 (과제 66-69번) 69
- 나. 바이오신약 (과제 70-101번) 70
- 다. 3D 프린팅 (과제 102-116번) 79

4. 에너지 신소재 분과

- 신재생에너지 (과제 117-124번) 82

5. 신서비스 분과

- 가. O2O (과제 125-138번) 84
- 나. 핀테크 및 금융분야 (과제 139-151번) 88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과제

○ 과제번호별 분야

- 1-24번 : 무인이동체
- 25-65번 : ICT융합
- 66-116번 : 바이오헬스
- 117-124번 : 에너지신소재
- 125-151번 : 신서비스

○ 개선방안 읽는 법

- 기초치 : 건의내용을 이미 조치
- 수용 : 건의내용을 소관부처가 수용하여 제도개선 추진
- 일부수용 : 건의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을 결정
- 대안마련 : 건의내용에 대해 소관부처가 대안을 마련
- 규제존치인정 : 위원회가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결정
- 추가논의 :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

○ 비고 읽는 법

- * : 주요 통계 또는 현황
- ● :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 ★ : 주요 해외사례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	------	------	------	------------

1. 무인이동체 분과 가. 무인기 (과제 1~14번)

1	<p><u>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비행계획 수시 변경</u></p> <p>-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비행계획과 공역배정을 분기 단위로 하고 있어 계획변경에 어려움</p>	<p>국토부 (첨단항공과)</p>	<p>(기조치) 여타 시범사업자와 중복비행 문제가 없는 경우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토록 조치 중</p>	<p>* '15.12~'17.12월간 부산, 대구, 영월, 고흥, 전주 등 5개 시범 공역을 운영하여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 지원</p>
2	<p><u>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기간 확대</u></p> <p>-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시험비행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매번 반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p>	<p>국토부 (첨단항공과)</p>	<p>(수용) 동일지역을 반복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 허가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 적용('16.9월)</p>	<p>●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개정 필요</p>
3	<p><u>무인비행장치 조종 준수사항 명확화</u></p> <p>-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이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때 금지 등으로 모호하여 오해 소지</p>	<p>국토부 (첨단항공과)</p>	<p>(수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 등 내용을 포함한 안전가이드 앱 제공('16.7월)</p>	<p>★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가 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 비행금지구역·비행장 주변 비행, 야간비행, 비행고도를 제한하는 규제 운영</p>
4	<p><u>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세분화</u></p> <p>- 현행 조종자 자격을 3종류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비행선)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미반영</p>	<p>국토부 (첨단항공과)</p>	<p>(대안마련) 회전익장치 조종자격을 단축, 다축으로 세분화('16.9월)</p>	<p>* 사용사업을 위한 무인비행장치만 조종자 자격증명 필요</p> <p>●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운영세칙 개정</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5	<u>수도권 인근 지역의 시험비행 공간 확대</u> -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참여기업 34개사 중 19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나, 시범구역(5개)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	국토부 (첨단항공과)	(수용) '16.3.3 수도권 4곳*에 비행승인 면제(150kg이하) 추가 (서운산, 오촌, 북좌, 청라)	* 신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서운산</td> <td>경기도 안성 서운면 인리 인근</td> </tr> <tr> <td>오촌</td> <td>경기도 안성 서운면 오촌리 인근</td> </tr> <tr> <td>북좌</td> <td>경기도 안성 보개면 북좌리 인근</td> </tr> <tr> <td>청라</td> <td>인천시 서구 백석동 인근</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서운산	경기도 안성 서운면 인리 인근	오촌	경기도 안성 서운면 오촌리 인근	북좌	경기도 안성 보개면 북좌리 인근	청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인근
명칭	위치													
서운산	경기도 안성 서운면 인리 인근													
오촌	경기도 안성 서운면 오촌리 인근													
북좌	경기도 안성 보개면 북좌리 인근													
청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인근													
6	<u>원전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범위 축소</u> - 원전시설 반경 19km, 고도 5.5km는 비행금지구역 범위	국토부 (항공관제과) 국방부 (기본정책과)	(수용) 비행금지구역 범위 축소 검토 동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 등 안보기관 추가 협의(~'16.6월)	● 항공고시보(NOTAM) 개정 ★ 미국은 9.11테러 직후 원전시설 주변 비행금지 범위를 강화하였으나, 현재는 반경 5km, 고도 2,000ft(6백m)로 완화										
7	<u>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구역내에서 주파수(900MHz, 2.4GHz) 사용 허용</u> - 현재 무인기는 대부분 비면허 주파수대역인 900MHz 또는 2.4GHz 사용	미래부 (주파수정책과)	(일부수용) 900MHz는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으로 허용 불가하나 2.4GHz는 시범사업용 등으로 요청시 영향분석 후 허용	* 904~915MHz 대역은 KT 이동통신, 국내 비면허 대역인 917~923.5MHz는 IoT용으로 사용 중										
8	<u>주파수 채널별 대역폭 등 기준 마련</u> - 주파수(5,030~5,091MHz) 채널별 대역폭 정할 필요	미래부 (전파연구원)	(기초치) 무인항공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 완료('15.12월)	* 무인비행장치 지상제어용 주파수(5,030~5,091MHz)에 대한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대역폭 등 기술기준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9	<u>민수용 무인기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완화 운영</u>	산업부 (무역안보과)	(기초치) 민수용 무인기에 대해 전략물자 완화 규정 적용 중('15.7.20)	★ 일본·유럽은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출통제, 미국은 국내에 비해 엄격
10	<u>비행승인 및 촬영 허가절차 간편화</u> - 비행승인(항공청, 국방부), 항공촬영허가(국방부)로 허가기관 이원화	국토부 (첨단항공과) 국방부 (기본정책과, 국방정보본부)	(수용)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는 인터넷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운영(국토부, '16.12월)하고 항공 촬영 허가 지침서 개정(국방부, '16.12월)	* 비행승인(국토부 관할)→ 국토부 비행승인(군 관할)→ 군(관할부대) 촬영허가(서면)→국방부 ★ 미국의 비행승인 관리기관은 연방항공청(FAA), 영국은 민간항공관리국(CAA)
11	<u>무인비행장치 사업범위 제한규정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u>	국토부 (첨단항공과)	(수용) 무인비행장치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사생활침해가 없는 경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16.9월)	●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개정 ★ (미국)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불허하고 있으며, 임시허가 방식으로 운영
12	<u>비행승인 안전관리 대상 기준 완화</u> - 자체 중량 12kg가 넘는 소형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시험비행 시마다 사전 비행신고 필요	국토부 (첨단항공과)	(수용) 자체중량 12kg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으로 비행승인 예외 기준 완화('16.9월)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 안전관리 대상 (미국) 25kg 이상 (영국) 20kg 이상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3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에 신규기업 참여 확대	국토부 (침단항공과)	(수용) 공모를 통해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기업 기회 부여('16.12월)	*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15.12월~'17.12월) : 공공기관·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5개 대표기관 선정
14	국책연구기관 보유 원천기술을 민간기업에 개방	미래부 (정보통신 방송기술 정책과)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기초치)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은 무인기 관련 기술을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www.ntis.go.kr)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정보 제공 중	★ (미국) 기술이전 가능 기술을 웹사이트 공개 및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1. 무인이동체 분과

나. 자율주행차 (과제 15~24번)

15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정부 R&D 인건비 지급 필요	산업부 (산업기술 개발과) 미래부 (연구제도과)	(수용) 인건비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 홍보 및 기업의 인식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안내 등 추진(사업추가 공고 시, '16.12월)	* 인건비 현금지원이 안되는 과제라도 참여기업 등의 수행역할이 S/W나 설계기술 등일 경우 인건비 현금지원 가능토록 운영
16	정부 R&D 지원 과제수 제한(총량제) 해제 - 동일기간 동안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R&D 과제수를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로 한정	산업부 (산업기술 개발과)	(수용) 올해 중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통해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추진('16.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7	<p>정부 R&D 중소기업 현금부담비율(40%) 하향 조정</p> <p>- 현금보유가 비교적 적은 자율주행차 관련 중소기업에게 R&D과제 현금부담비율 조정 필요</p>	<p>산업부 (산업기술 개발과)</p>	<p>(규제존치인정) 기업의 현금부담금 상향은 수행기관의 R&D과제 몰입도를 높여 R&D 성과증진 및 기술사업화 촉진이 목적으로서, 기업의 책임있는 과제 수행 의지를 갖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p>	<p>* 중소기업 부담금 현황 (원천기술형과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5년</th> <th>'16년</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 부담금 (총사업비 대비)</td> <td>25%</td> <td>25%</td> </tr> <tr> <td>부담금의 현금부담률 (실질 현금부담비율)</td> <td>10% (2.5%)</td> <td>40% (10%)</td> </tr> </tbody> </table>	구 분	'15년	'16년	중소기업 부담금 (총사업비 대비)	25%	25%	부담금의 현금부담률 (실질 현금부담비율)	10% (2.5%)	40% (10%)
구 분	'15년	'16년											
중소기업 부담금 (총사업비 대비)	25%	25%											
부담금의 현금부담률 (실질 현금부담비율)	10% (2.5%)	40% (10%)											
18	<p>자율주행 시험장 개방·지원</p>	<p>국토부 (첨단자동차 기술과)</p>	<p>(수용) 임시운행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수요일정에 따라 사전 주행시험장소를 확충 예정</p>	<p>* 4월, 2대의 공단 시험로 사용 신청 접수</p>									
19	<p>학교 운동장 등의 자율주행 실적 인정(임시운행)</p>	<p>국토부 (첨단자동차 기술과)</p>	<p>(수용) 반드시 사전시험주행을 시험시설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내 도로, 단지내 시설 등에서의 사전시험주행 실적을 인정할 계획(즉시시행)</p>	<p>★ (영국) 폐쇄된 도로 등에서 사전 주행 실시</p>									
20	<p>국가 간 “임시운행 허가 상호인정” 추진</p>	<p>국토부 (첨단자동차 기술과)</p>	<p>(규제존치인정)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일부 개발용 자율주행차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고, 임시운행허가 기준과 운행환경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국가간 상호인정은 어려움</p>	<p>★ 국가간 상호인정하고 있는 사례 없으며, 현재 임시운행은 국가별/주별(미국) 승인 중</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21	<u>국토도로지도 보급 활성화</u> - '정밀도로지도'를 기업 및 대학 등 신청자에 한해 신청자가 직접 국토지리정보원에 방문 시 제공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용) 현재는 직접방문하여 USB를 수령하고 있으나, 정밀도로지도의 시범구축 기간인 올해 중 보안방안 마련 후, '17년부터 편리하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할 계획	* 정밀도로지도는 공개 및 국외반출이 제한된 자료로서, 정보활용 시 제공받는 자의 인적사항등을 위한 직접방문 수령
22	<u>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요건 간소화</u>	국토부 (첨단자동차 기술과)	(수용) 임시운행 시행 상개선점을 취합하여 연말까지 허가규정을 개정할 계획('16.12월)	★ 미국·영국·네덜란드·캐나다 등 다른 국가와 안전운행요건 규정 동등 수준
23	<u>임시운행 허가구역 "네가티브" 전환</u>	국토부 (첨단도로 안전과)	(수용) 시험운행구간을 시가지 도로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여 자동차 제작사, 부품업체 등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16.12월)	★ (미국-네바다주) 시험운행 신청 시 신청자가 명시한 도로에서만 시험운행 (영국) 브리스톨, 코벤트리, 밀턴케이스 등 지정된 지역에서 시험운행 실시
24	<u>임시운행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u>	국토부 (첨단자동차 기술과)	(수용) 향후 법령개정('16.12월) 및 예산확보를 통해 데이터 센터 구축방안 검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미국) 교통부 주관으로 NHTSA가 V2X 실현을 위한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 시행(500억원 규모)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	------	------	------	------------

2. ICT 융합 분과

가. 클라우드 I (과제 25~28번)

25	<p><u>금융정보시스템 망분리 의무 완화</u></p> <p>- 금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물리적 망분리 의무 완화</p>	<p>금융위 (전자금융과)</p>	<p>(일부수용)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금융자산 처리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클라우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16.9월)</p>	<p>●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등 개정</p>
26	<p><u>사이버 대학의 설비기준 개선</u></p> <p>-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설비기준 완화</p>	<p>교육부 (이러닝과)</p>	<p>(수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16.6월)</p>	<p>● 원격교육설비기준고시(교육부 고시)표1, 표3 개정</p>
27	<p><u>전자금융업 허가 시 "557규정" 완화</u></p> <p>- 금융회사 전체 인력 중 5%는 IT인력으로, IT인력 중 5%는 정보보호 인력으로, 전체 IT예산중 7%이상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토록 한 규제 완화</p>	<p>금융위 (전자금융과)</p>	<p>(수용) 인력·예산 요건준수 기한을 신규등록 허가 후 당해 연도말이었던 것을 두 번째 연도말까지 갖추도록 완화("16.12월)</p>	<p>●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고시) 제8조 제3항 개정</p>
28	<p><u>전산실 내 무선통신망 사용 허용</u></p> <p>- 금융기관용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를 위해 해당 전산실내에서 무선통신망 사용 허용</p>	<p>금융위 (전자금융과)</p>	<p>(일부수용)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를 위한 무선통신망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16.9월)</p>	<p>●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고시) 제11조 등 개정</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	------	------	------	------------

2. ICT 융합 분과

나. 사물인터넷 (과제 29~38번)

29	<u>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SW 등급 완화</u> -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SW의 의료기기 분류에 따른 높은 규제 등급 완화 (3등급→2등급으로 완화)	식약처 (의료기기 정책과)	(수용)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S/W에 대한 품목을 재분류 또는 세분화('16.10월)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3조, 별표 개정)
30	<u>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등급 완화</u> - 의료데이터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게이트웨이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외	식약처 (의료기기 정책과)	(수용) 의료데이터만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을 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완화('16.8월)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3조, 별표 개정)
31	<u>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u> -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허용	복지부 (약무정책과)	(수용)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16.10월)	* 현행법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약사법 제50조)
32	<u>버스에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추진</u> - 택시상단에는 디지털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버스에는 허용되지 않음	행자부 (주민생활 환경과)	(대안마련) 근거 마련 후, 교통수단(버스 등)을 이용한 광고물 시범사업 실시('16.7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33	<u>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 완화</u> - 현재 홈네트워크 중 홈게이트웨이에 적용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KS X 4501 기능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	산업부 (전기전기과)	(수용) 홈네트워크에 적용하는 프로토콜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개선("16.5월)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고시) 개정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특성에 맞춰 각각 홈네트워크 표준 제정 중 등						
34	<u>콘센트 단극차단 기술 허용</u> - 콘센터의 양극차단 개폐소자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콘센트 성능개선 및 새로운 부품개발이 어려움	산업부 (국가기술 표준원)	(규제존치인정) 현재 국가 전기 인프라 특성상 단극차단만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단극차단 허용은 곤란	★ 해외는 Live·Neutral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Live극에 특정해서 스위치 단극차단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미국</td> <td>일본</td> <td>영국</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미국	일본	영국			
미국	일본	영국								
										
35	<u>온라인 평가를 위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 허용</u> -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오프라인 활용은 가능하나 온라인 활용(전송) 불가	문체부 (저작권 정책과)	(기조치) 디지털 저작물을 활용한 온라인평가 가능하도록 "공중송신" 개념을 추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저작권법 제32조 개정 (국회계류중)						
36	<u>원격교육서비스 설비기준 완화</u> - 사이버대학교 원격교육 설비기준은 기술발전에 따른 유연한 기술적용에 한계가 있음	교육부 (이러닝과)	(수용) 최신 ICT기술을 반영하여 사이버대학교 원격교육 설비기준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개선("16.6월)	● 원격교육 설비 기준(교육부 고시) 개정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37	<p>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1)</p> <p>- 해외법인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없어 제도개선 마련 필요</p>	방통위 (이용자 총괄과)	(기초치) 현행 법에서 해외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여 부가통신사업 영위 시 국내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프랑스 법원은 나치 기념물품의 전시·판매를 호스트하고 있는 야후에게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 못하도록 조치 명령('00.11월)
38	<p>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2)</p> <p>- 모바일(In-App) 결제 시 반복적인 고지의무를 하도로 한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가이드라인'이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 발생</p>	방통위 (이용자 보호과)	(기초치) 현재 가이드라인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동등하게 규제하고 있음	

2. ICT 융합 분과

다. 클라우드 II (과제 39~47번)

39	<p>클라우드 도입 가능한 고시 제정</p> <p>-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경우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p>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수용)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16.7월)	<p>●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 제정</p> <p>★ 일본의 후지쓰는 환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 인터넷을 통해 병원 뿐만 아니라 재택 의료 현장 등에서도 간병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왕진선생(往診先生)” 서비스를 시작(2013.1)</p>
40	<p>클라우드 사용 관련 유권해석 필요</p> <p>-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 경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해석이 불명확</p>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수용)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16.7월)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41	<u>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u> - 개인식별이 가능한 의료정보에 대한 명확한 익명화 기준 정립 필요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수용)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에서는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기준 마련·배포("16.12월)	★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미국) 가이드라인에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의료인 등의 이용 및 공개 허용
42	<u>맞춤형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u> - 코호트 연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산재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필요	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	(수용) 코호트 연구의 경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12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신설
43	<u>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장비 완화</u> - 대용량의 유전자정보를 클라우드에 보관·분석을 대행하게 할 경우 원심분리기, 초저온냉동고 등의 인프라를 갖추도록 한 규제 완화	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	(기초치) 유전자정보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정보관리실, 전산장비 및 데이터시스템의 전산시설 장비만 갖추도록 하고 있음	
44	<u>의료기록 열람 허용</u> - 의료진이 아닌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은 환자의 의료기록 열람 등이 불가함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대안마련)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에서는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기준·연구목적 활용 기준 마련·배포("16.12월)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45	<p>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p> <p>- ICT-헬스케어 융합을 위해 개인의료기록이 필요함으로 개인의료기록이 축적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침 마련 필요</p>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수용)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도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병원간 진료기록 공유를 위해 용어·서식 등의 표준 마련 예정('16.12월)	★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전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의 교류와 이용을 위한 표준화된 EHR(Electronic Health Records) 구축 추진 중
46	<p>병원간 의료정보 온라인 전송 허용</p> <p>-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은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타 의료기관에 직접 전달해야 하나,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선</p>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기초치)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록을 타 의료기관에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됨	
47	<p>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p> <p>-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서약서' 내용 개선</p>	복지부 (보험정책과)	(기초치) 이용서약서에 명시된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문구 삭제함('16.3월)	● 이용서약서 개선

2. ICT 융합 분과

라. 빅데이터 (과제 48~65번)

48	<p>위치정보사업 허가제도 완화</p> <p>- 개인식별이 안되는 스마트기기 등은 위치정보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통신사업자 허가를 득한 위치정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조치</p>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일부수용) 개인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한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검토('16.12월)	<p>● 위치정보법 개정</p> <p>★ (미·EU·일) 통신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제공을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p>
----	---	--------------------	---	--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49	<u>위치정보사업 허가절차 완화</u> - 허가기간 1개월로 단축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요구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대안마련) 허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서류의 직접방문 제출외에 우편제출도 허용("16.12월)	● 위치정보법시행령 및 고시 개정
50	<u>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무 완화</u>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수·합병 및 이용약관 변경 등의 신고의무 완화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수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수·합병 시 변경사항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사항 간소화("16.12월)	● 위치정보법시행령 개정
51	<u>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필요</u> - 단기적으로 명확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정의'조항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추진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수용)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개인정보 개념을 구체화하는 "개인정보 통합 법해설서" 마련("16.6월)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검토
52	<u>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 명확화 등</u> -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비식별화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정보로 간주됨으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필요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수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16.6월)	★ (미국) 비식별화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을 폭넓게 허용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53	<p><u>신체정보 수집·활용 근거 마련</u></p> <p>- 착용형스마트기기로부터 수집되는 신체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p>	<p>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p> <p>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p>	<p>(수용) 비식별화된 신체정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16.6월)</p>	<p>★ (미국) 비식별화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을 폭넓게 허용</p>
54	<p><u>개인정보 사전동의(opt-in) 제도 개선</u></p> <p>- IoT환경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가 불가능함으로 정보주체가 거부하기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후거부방식(opt-out) 허용</p>	<p>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p> <p>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p>	<p>(수용) IoT환경에 맞추어 개인정보 사전동의(opt-in)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후거부방식(opt-out) 추진('16.12월)</p>	<p>●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개정</p> <p>★ EU는 사전동의(opt-in)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이행, 법률상 의무준수 등 불가피한 경우 동의 면제</p>
55	<p><u>위치정보 사후거부방식(opt-out) 허용</u></p> <p>-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동의 방식(opt-in)이 아닌 사후거부 방식(opt-out)으로 허용</p>	<p>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p>	<p>(수용) 전면적인 사후거부방식(opt-out) 허용은 어렵지만 '법제정비 연구반'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 검토('16.12월)</p>	
56	<p><u>개인정보 관련법 통합</u></p> <p>-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에서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일법률 체계 제정 필요</p>	<p>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p> <p>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p>	<p>(대안마련) 개별법령은 유지하되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용어 및 처리원칙 등 기준 마련('16.12월)</p>	<p>★ (미국)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 없이 분야별 필요에 따라 개별법을 제정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응</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57	<p><u>개인신용정보 위탁시 의무 명확화</u></p> <p>- 개인신용정보 클라우드 위탁 시 개인정보 동의 예외, 이와 관련한 금융위에 보고범위 명확화 및 수탁자에 대한 교육 면제 등 요구</p>	금융위 (신용정보팀)	(기초치)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에 위탁할 경우 개인 사전동의를 예외로 하고 있고, 보고범위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자체교육 이행 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	
58	<p><u>빅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등</u></p> <p>-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지원, 저작자의 인터넷 표시 의무화 및 저작물 수집시 해당 사이트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p>	미래부 (융합 신산업과)	(수용) 민간 데이터 유통거래를 지원하는 선도 시범사업 추진("16.7월~12월)을 통해 빅데이터 유통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16.12월)	★ (미국) 빅데이터 시장(46조원)과 데이터 유통 관련 시장(242조원)이 구분되고 '데이터 가공 및 거래 산업(브로커)' 활발
		문체부 (저작권 정책과)	(대안마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작자 표시 활성화 지원("16.12월) 및 저작권 찾기 서비스 추진(연중)	★ 미국 저작권청, 일본 문화청, 독일 등에서 저작권 정보검색, 권리자 등을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
59	<p><u>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u></p> <p>-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DB)의 '가치와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p>	미래부 (융합 신산업과)	(수용)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술가치평가' 사례를 참조하여 데이터베이스 가치평가 방법론 마련 및 시범 적용 확대("16.4월~)	★ DB구축에 비용합산법 적용 권고(UN,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60	<u>공공데이터 활성화 촉진</u> -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및 비식별화, 업데이트 등 방안 마련 필요	행자부 (공공정보 정책과)	(수용) 공공데이터를 각 기관들이 동일한 기준과 형식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개방표준'을 추가 제정('16.12월)하고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추진('16.12월)	● 공공 데이터 개방표준 개정
61	<u>공공데이터 평가·인증 강화</u> - 공공데이터의 평가 및 인증 등 진단절차 마련	행자부 (공공정보 정책과) 미래부 (융합 신산업과)	(수용)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16.2월)'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16.12월)	★ 미국 연방정부 정보의 품질 확보를 위해 2000년 '데이터 품질법(Data Quality Act)' 제정
62	<u>공공기관 오픈API 제공지침 명확화</u> - 부처 및 공공기관별 오픈API 제공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행자부 (공공정보 정책과)	(수용) 공공데이터 오픈API 제공지침 명확화(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반영, '16.5월)를 통해 오픈API 제공 체계적 관리 추진	● 공공데이터 오픈API 제공절차 가이드라인 개정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예를 들어, 포털이 제공하는 지도, 날씨 등 정보와 같이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자유롭게 활용토록 제공
63	<u>부당한 개인정보 관리의무 완화</u> -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업체에게 개인정보의 폐기 및 관리의무 완화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기초치) 개인정보 파기·관리 의무 대상은 위탁자이며 수탁자(SaaS)인 클라우드 업체는 대상이 아님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64	<u>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개선</u> - 개인정보 저장 목적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외이전 규정에 의해 고객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하는 규제 완화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기초치) 해외 클라우드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 동의절차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3월)	
65	<u>개인 위치정보 통보요건 완화</u> -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매회마다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을 정보제공 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 완화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기초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매회마다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15.8월)	★ 미국은 전자통신법 상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통보의무 없음

3. 바이오헬스 분과 가. 정밀재생 (과제 66~69번)

66	<u>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u> - 19개 유전자 검사 항목 금지·제한으로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질병예방, 식이조절 등 연관 서비스 산업 발전 저해	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	(수용) 현행 금지항목에 대하여 존치여부 재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16.5월.)하고 개선사항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령개정 추진('16.12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67	<u>뇌조직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u> - 인체유래물이나 시신 유래물의 취급·관리에 관한 규정 미비로 실질적 뇌조직 연구 제한	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	(수용) 시신유래물 연구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16.8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16.12월)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체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68	<u>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u> -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잔여난자 범위를 동결 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동결·해동과정에서 난자의 질 저하로 실험결과 도출 어려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미해결과제) 난자 채취시 여성 건강 침해, 난자 매매 가능성 등으로 체외 수정에 우선 사용 후 잔여난자 연구 사용 가능토록 규정, 학계의 논의를 거쳐 종교계, 여성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미국(일부 州), 영국 제한적 허용
69	<u>잔여배아 연구대상 확대</u> -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창의적 연구를 제한하므로 후천성면역 결핍증(AIDS) 등 연구대상 질병 추가 필요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수용) 잔여배아를 활용한 연구에 후천성면역 결핍증(AIDS) 등을 연구대상 질병으로 추가	★ 영국은 연구대상 범위 광범위하게 인정

3. 바이오헬스 분과

나. 바이오신약 (과제 70~101번)

70	<u>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u> -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 시에만 유전자 치료연구 가능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수용) 연구자들의 연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 연구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16.9월), 의견수렴 및 개정안 작성 등 생명윤리법 개정 준비('16.12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개정('15.12.29.) ★ 일본은 연구허용 범위에 조건이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은 배아가 아닌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의 연구범위 제한 규정이 없고, 임상시험 승인(FDA 등) 과정을 통해 안전성 확보
71	<u>유전자치료 범위 완화(70번 과제 동일)</u> -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 불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72	<u>인체유래물의 제공 관련 규제 완화</u> - 무상 또는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고품질의 인체유래물 자원 도입을 위해 유상거래 허용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대안마련) 산업측면을 고려한 인체유래물 수집·분석·보관 등의 실비 보전항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16.10월)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인체유래물의 수집·분석·보관,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보전 차원에서 인체유래물은행장이 산정하여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 가능
73	<u>백신개발 시 영유아 임상시험 개선①</u> - 일반의료기관 임상참여	식약처 (임상제도과)	(기조치) 임상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상시험의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도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 등 마련 배포('16.6월)	* 임상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규정
74	<u>백신개발 시 영유아 임상시험 개선②</u> - 해외임상결과 인정	식약처 (생물제제과)	(수용)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기허가 백신과 유사한 영유아 국가예방 접종백신의 국내개발 시 해외 임상시험 자료를 수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개정('16.7월)	●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1] 개정
75	<u>재생의료분야 관련 규제 개선</u> -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등에 필요한 원료물질 조달 관련 법규 정비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수용)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하에 원료혈액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없고 공급혈액원을 통해 원료혈액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MOU체결 등 지원	* 현재 국내 1개 기업에서 임상2a상(용법·용량 확인)은 '16년7월부터 향후 2년 간 예정, 임상2b상(용법·용량 평가)/ 3상(치료적 확증)은 '18년 이후 실시 예정, 생산은 '22년 목표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76	<u>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 개선①</u> -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방안 마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수용)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바이오시밀러 산정 시 우대방안을 검토·마련하여 관련 규정 개선('16.10월)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별표1] 개정('16.10.)
77	<u>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 개선②</u> - 바이오시밀러 약가 환급제 적용	복지부 (보험약제과)	(대안마련)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중이며 약가산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선 검토('16.10월)	★ 바이오시밀러 약가는 해당국 오리지널 약가의 52~85% 수준으로 국가마다 다양
78	<u>동물실험 규제 완화</u> - 동물실험 관련 법령이 많아 연구 시 혼란 가중	식약처, 농식품부	(수용) 미래부·농식품부·식약처·복지부·환경부 등 유관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 관련 법령 안내서' 발간('16.9월)	*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등 법령
79	<u>유전자조각 활용 연구개발 절차 개선</u> -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자 조각을 이용하여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개발 시 유해성 심사 면제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대안마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변경승인사항 중 에볼라, 메르스 등 위해가능성이 큰 경우는 개발·실험시 사전승인필요 다만, 처리기간을 60일→30일로 단축	● 규제프리존특별법 제45조 * 유전자조각 : primer(시발체), probe(프로브), positive control(양성대조물질) 등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80	<p><u>연구목적 하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 요건 완화</u></p> <p>- 의학연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수준의 보호장치만 마련하면 제3자에게 환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p>	<p>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p>	<p>(대안마련)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에서는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기준·연구목적 활용 기준 마련·배포('16.12월)</p>	<p>*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자의 동의 하에 누구나 대리인 자격으로 의료사본 발급이 가능</p>
81	<p><u>세포치료제 개발 시 공여자 정보 제출 면제</u></p> <p>- 국가출기세포은행에 등록하여 세포에 대한 검증절차가 완료된 경우 세포치료제 개발시 공여자 정보제출 면제 필요</p>	<p>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세포유전자치료제과)</p>	<p>(대안마련) 세포치료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증자의 병력정보가 필요하나, 의료기록 보존기한(10년) 경과로 기증자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존되어 있는 세포를 이용한 안전성 검사(무균, 바이러스 시험 등) 결과로 기증자(공여자) 적합성 대체 가능</p> <p>* 세포치료제 기증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 라인 제정('16.8월)</p>	<p>★ (영국) 기증자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으로 대체</p> <p>(Guidance : Donation of starting material for cell-base advanced therapies)</p>
82	<p><u>임상시험에 대한 GCLP 기준 마련</u></p> <p>- GCLP :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임상시험분석 관리기준)</p>	<p>식약처 (임상제도과)</p>	<p>(기초치) 임상시험분석관리기준 (GCLP)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5.12.24. 국회에 제출</p>	<p>● 약사법 제34조제3항제1호 개정안 및 제34조의2제1항제2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83	<u>난치암에 대한 면역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u> - 세포치료제의 난치성 암치료 임상시험에 대한 허가를 의약품에서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허가토록 완화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복지부 (보험약제과)	(대안마련)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증례수를 조정하여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식약처), 신약과 같이 허가-평가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방안을 검토(복지부)	
84	<u>멸균시험 관련 시료 수량 축소</u> - 재사용할 수 없는 시료 특성상 허가 전 시험시료 비용 및 수량 과다로 중소기업 애로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 안전평가과)	(대안마련) 제품의 안전성 및 멸균유효성 확보 문제상 시료재사용 불가, 다만, 의료기기의 안정성 시험 횟수 등을 조정하여 피규제자가 시료 수량 축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16.7월)	●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 제3조 및 제4조(식약처 고시) 개정 ★ 국제규격 : ISO11607-1(멸균 및 포장시스템) 및 ASTM 1980 (가속노화 시험방법)
85	<u>희귀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요건완화</u> - 국내외 희귀의약품 대상환자 수의 차이가 크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이 가능한 임상시험계획서 요구	식약처 (의약품심사 조정과)	(기초치) 임상승인계획서도 임상환자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임상시험시 문헌정보, 병원DB 등에 따른 대조군 설정도 인정되는 등 현행 규정·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능	* 희귀의약품 :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하여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 유럽(EMA), Guideline on clinical trials in small populations(2007)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86	<u>일반기기 임상시험 시 관리기준 완화</u> -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기기를 이용한 연구자 임상시험 시 임상시험 관리기준 완화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기초치)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기기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만으로 연구자 임상시험 가능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87	<u>잔여검체 임상시험 사용 승인 완화</u> -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IRB 심의 및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모두 받는 절차 개선 요청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기초치) 제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잔여검체를 이용한 시험 등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 계획은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15.7월)	* 잔여검체 :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 검체
88	<u>유전자치료제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허용</u> - 유전자치료제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청	식약처 (임상제도과)	(기초치) 약사법상 유전자치료제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만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지 않아 현행 규정상으로도 가능	* 임상시험은 ①연구자주도(기초연구) ②기업주도(기초연구 및 상용화) 임상시험으로 구분
89	<u>세포치료제의 특성을 감안한 시험·평가 개선</u> - 동일한 제조방법이나 다른 항원으로 변경 시 다른 제품군으로 심사하는 방식 개선 요청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	(기초치) 항원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동일 제조사의 동일한 제조방법, 유사한 임상사용경험에 따른 안전성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사례별로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완화 가능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90	<p><u>생물의약품 허가 시 공정밸리데이션</u> <u>주입량·횟수 조정</u></p> <p>- 조성 및 농도가 동일하고 충전량만 다른 생물의약품 주사제의 경우 process validation 적용 완화 요청</p>	<p>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p>	<p>(기초치) 주사제의 공정 밸리데이션은 원칙적으로 품목별 실시하되, 제조공정, 조성 및 농도가 동일하고 충전량이 다른 주사제의 경우 브라케팅 방법을 적용한 공정밸리데이션 허용</p>	<p>* 브라케팅 방법 : 용기충전량이 1, 5, 10mL인 경우 1mL와 10mL 시험자료로 5mL 자료 인정</p> <p>*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1] 개정 완료 ('14. 10. 10)</p>
91	<p><u>융복합 유전자치료제 가이드라인 마련</u></p> <p>- 세포치료제, 나노 의약품과의 융합기술에 의한 신개념 융복합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 중이므로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p>	<p>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세포유전 치료제과)</p>	<p>(기초치) 유전자치료제와 관련하여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초기임상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3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 중이며, 융복합제품 인허가를 위하여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을 운영 중</p>	<p>★ 미국은 FDA OCP(융복합제품 지원국)에서 품목분류, 유전자치료제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고 유럽은 첨단 융복합의료제품으로 정의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p>
92	<p><u>생물학적 제제 출하승인 처리기한 단축</u></p> <p>-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계절성 품목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각 제제별 검정항목 중 최대시험 기간에 따른 검정처리기간 단축 요청</p>	<p>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p>	<p>(대안마련) '위해도 기반 국가출하승인 제도'시행('16.4월)으로, 제조사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수준이 높은 경우 신속 출하승인 가능</p>	<p>●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조, 제10조, 제11조 개정 완료 ('14.11.27)</p>
93	<p><u>국제규정(INN, USAN 등)에 맞는</u> <u>신약물질 성분명 개발 가이드라인 필요</u></p> <p>- 바이오 신약 성분명, 국제일반명 등 명확한 가이드 부재</p>	<p>식약처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과)</p>	<p>(기초치) 현재 관련 규정 및 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운영('15.12월) 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p>	<p>* INN(세계보건기구 WHO가 부여하는 공식 성분명칭), USAN(미국 AMA가 승인한 국제 의약품명칭)</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94	<u>유전자치료제 등 수입품목 판매증명서 제출 면제</u> - 국내 개발·해외제조된 유전자치료제 등의 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신속한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수용) 국내 개발되어 해외에서 제조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판매증명서 제출 면제 추진('16.7월)	●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제4조 개정 추진('16.7월)
95	<u>유전자검사서비스 제도개선</u> - 유전자 항목을 신고하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나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 요청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기초치) 유전자 검사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된 검사항목은 우선 신고 수리 후 사후 평가·관리하는 체계로 운영 예정(~'16.11월)	
96	<u>예측성 질병유전체검사에서의 유전자 신고제도 개선</u> - 신고제인 유전자검사 목록결정이 허가제로 운영 중이고 한국인·동양인 대상과 서양인 대상 검사 유전자 항목을 분류하여 신고처리 요청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기초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종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유전자 검사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된 검사항목은 우선 신고 수리 후 사후 평가·관리하는 체계로 운영 예정('16.11월)	
97	<u>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 규제 개선</u>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기초치)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 예방목적의 검사 직접 실시가 가능토록 생명윤리법 개정('16.6월 시행예정)	* 생명윤리법 개정('16.6. 시행예정)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98	<p><u>개인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u></p> <p>- 개인 대상 질병의 스크리닝 및 발병가능성 예측을 위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유전자 항목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가능토록 요청</p>	<p>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p>	<p>(기초치)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 예방목적의 검사 직접 실시가 가능토록 생명윤리법 개정('16.6월 시행예정)</p>	<p>* 생명윤리법 개정('16.6. 시행예정)</p>
99	<p><u>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u></p> <p>- 기관 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요구 지양 및 유전체학 전문가, 유전체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p>	<p>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p>	<p>(수용)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 필수적이지 않은 대외비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고, '16년 3월부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회에 유전체기업협의회 임원 포함</p>	<p>★ (미국) 표준인증제도 CAP 사업에는 전문가만 포함,사업단체 등 미포함</p>
100	<p><u>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공급 시 의료기관의 저가납품 요구 방지</u></p> <p>- 제약사의 퇴장방지의약품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 보완 요청</p>	<p>복지부 (약무정책과)</p>	<p>(수용) 제약협회·관련 업계 등과 퇴장방지의약품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퇴장방지의약품이 최소 원가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예정</p>	<p>●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개정 및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입법예고(4.26.)</p>
101	<p><u>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 완화</u></p> <p>- 신약개발과정이 5-10년 소요되므로 매출기준을 낮추거나 기술이전 실적 등 대안 검토 요청</p>	<p>금융위</p>	<p>(대안마련)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적격기업으로 판단 시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3년→5년)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p>	<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16.6.)</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	------	------	------	------------

3. 바이오헬스 분과 다. 3D 프린팅 (과제 102~116번)

102	<u>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 부여</u> - 건강보험공단 또는 환자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 부여 필요	복지부 (보험급여과)	(기초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식약처 품목허가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 진행	*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경우 심평원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코드 부여 (급여, 비급여) 결정
103	<u>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행위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 마련</u> -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시뮬레이션 등 3D 프린팅을 활용한 행위에 비용이 많이 소요	복지부 (보험급여과)	(수용) NECA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여 “관리체계, 비용지원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16.12월)·실시	★ 일본은 2013년부터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술을 승인받은 병원을 통해 유효한 data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청구 허용
104	<u>3D 프린팅 인체모형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인정 요청</u> - 의료기기로 인정 시 환자교육 및 모의수술 목적 등으로 활성화 가능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규제존치인정)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등 의료기기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 의료기기로 관리 시 인허가 등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우려	★ 미국·유럽 등도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105	<u>3D 프린터로 제조된 성형용 금형(몰드)의 관리방안 마련</u> -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요청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기초치) '3D 프린팅→성형용 몰드→의료기기 제작' 시 성형용 몰드는 인체에 접촉·삽입·이식되지 않고 성형용 제조에 사용되므로 제조설비에 해당되며, 제조원의 품질관리체계(GMP)에 따라 관리 중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식품·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 미국, 유럽 등도 의료기기가 아니라 제조설비로 제조원의 품질관리체계(GMP)에 따라 관리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06	<u>3D 프린터 관련 S/W의 의료기기로의 인정 요청</u> - 3D 제품 모델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는 의료용 핵심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기로 분류 요청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대안마련) 3D 제품 모델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공정의 제조설비에 해당되나 중장기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16.4월)	★ 미국, 유럽 등도 별도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107	<u>국산 의료용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검증체계 요청</u> - 의료용 3D 프린터 및 소재에 대한 안전승인제도의 도입 요구	식약처 (구강소화기과) 산업부 (전자전기과)	(대안마련) 3D 프린터로 제작된 최종출력물은 의료기기로 판단·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며 장비·소재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산업부에서 마련('16.10월)	★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3D 프린터 기기 및 소재를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108	<u>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u> - 중소형 의료기관이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출력물의 품목허가 등 제약 완화	식약처 (의료기정책과, 의료기안전평가과, 구강소화기과)	(대안마련) 질환별 제품 종류, 품질 및 안전성, 치과병원과 치과기공업간 사업유형의 벤치마킹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16.4월)	* 현재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 의료기기 제작가능
109	<u>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응급상황 예외조항 도입</u> - 응급상황 시 의사 책임 하에 3D 프린팅으로 의료기기 제조·사용이 가능토록 허용 요청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기초치) 대체 의료기기 및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 허가범위를 벗어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의 책임 하에 변경허가 전 사용 가능토록 고시 개정('16.11월)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미 FDA의 주문제작 의료기기 예외조항 및 EU의 주문제작기기 조항에서 허용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10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심사방안 마련 - 평가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청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과)	(기조치) 치과용 임플란트 정형용 임플란트, 지지체(뼈, 연골, 피부, 혈과) 등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3D 프린팅 가이드라인 발간('16.10월)	*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마련 (‘15.11.)되었으며,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111	3D 프린터 KC인증 부담 완화 -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3D 프린터 의 경우 기기의 중요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매회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부담 완화	산업부 국표원 (전신통신 제품안전과)	(수용) 파생모델제도로 KC 인증이 간소화되고 있으며, 3D 업계·협회 등에 전국 설명회(연2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적극 홍보하고, 업계-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여부 추가 검토('16.6월)	* 파생모델제도: 기본모델 인증 후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변경하지 않고 또 다른 모델을 출시할 경우 등록만으로 출시 가능 ★ 일본, 유럽, 미국 등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파생모델 제도 운용
112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터의 적합성평가 완화 - 적합인증을 취득한 USB 동글을 내장한 3D 프린터에 대한 적합인증 면제 또는 완화	미래부 (전파기반과)	(기조치)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무선 분야에 대한 추가 적합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합등록 절차로 가능	★ 미국은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터는 「FCC CFR 47 Part2&15 (공통기술기준과 무선기술기준)」에 따라 적합인증(FCC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함
113	3D 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차량단종 부품의 디자인보호권 제한 -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제작이 가능토록 현행 20 년인 디자인 보호기간 축소 요청	특허청 (디자인심사 정책과)	(규제존치인정)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디자인권 제한은 곤란하며 디자인권리자인 완성차업체와 합리적인 로열티 계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자동차산업 선진국들도 대체부품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14	3D 프린팅 소재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출력물 성능기준 마련 - 3D 프린팅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기준 마련 필요	산업부 (전자전기과)	(기초치) 업계의 수요가 높은 제조방식에 대해 3D 프린팅 장비, 소재 안전성, 환경유해성 및 출력물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6.10월)	* 업계, 3개 제조방식 주로 사용 - FDM(필라멘트형 원료를 녹여 적층), SLA(액체수지를 레이저로 경화), Polyjet(광경화성수지를 자외선으로 경화)
115	3D 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반영 - 금융·세제 등의 혜택이 가능토록 3D 프린터 제조업에 대해 표준산업분류 요청	통계청 (통계기준과)	(대안마련) 유관부처와 조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분류 심의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고시할 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에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17.1월)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개정 검토
116	푸드 프린터 규격 및 식품 위생, 안전 기준 마련 - 푸드프린터로 만든 식품에 대한 규격 기준 등 안전관리 기준 요청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식품기준과)	(기초치)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푸드 프린터는 식품용 기구로, 식품원료 충전 카트리지는 가공식품으로 관리되며 출력된 음식물은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별 기준·규격 및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적용되어 관리 중	* 제조·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현행 식품위생법령 적용

4. 에너지 신소재 분과 신재생에너지 (과제 117~124번)

117	건물일체형 태양전지에 대한 이중 인증 - BIPV 표준인증제도 마련 필요	산업부 (신재생 에너지과)	(수용) KS표준 마련 및 인증 대상 품목 지정('16.10월) 예정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개정 (한국산업표준) ★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BIPV에 대한 인증 없음
-----	---	-------------------	--	---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18	<p><u>파력발전 REC 가중치 조속 마련</u></p> <p>- 파력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 마련</p>	<p>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p>	<p>(수용) 신규 가중치 적용 연구용역수행('16.3~'17.2)중, 파력발전 가중치 신설('17.6월)</p>	<p>●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와 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p> <p>★ RPS 시행중인 영국, 이태리 등에서 가중치 적용 중</p>
119	<p><u>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배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u></p>	<p>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p>	<p>(대안마련) 연료전지 뿐만이 아닌 다양한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배열 활용을 위해 장기적인 검토 필요('17.12월)</p>	<p>●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p>
120	<p><u>심부지열자원 개발권리 부여방안</u></p> <p>- 심부지열자원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광업권 부여</p>	<p>산업부 (광물자원팀)</p>	<p>(수용) 지열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연구결과 및 지열자원 현황,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마련 추진('17.12월)</p>	<p>★ 화산지대의 지열이 풍부한 국가(독일, 필리핀, 미국 등) 위주로 법제 마련</p>
121	<p><u>ESS에 대한 전력 시장 진입 규제 완화</u></p> <p>- 대용량 ESS(energy storage system) 전력시장 참여 근거 및 정산기준 마련</p>	<p>산업부 (전력진흥과)</p>	<p>(기초치) 대용량(1MW이상) ESS의 전력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완료(전력거래소, '16.4.7)</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22	<u>CO2 운송에 ISO 탱크 활용 허용</u>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수용) 외국 운용사례 및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례기준 마련('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미국, EU 등에서는 산업용 및 식음용 CO2의 운송 용도로 ISO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123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계처리 용량 확대 - 주택 등 생산전력 중 남는 전력을 전기요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10→100kw)	산업부 (전력진흥과)	(기초치)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발전용량(100kw)을 고려하여, 자체소비 목적의 상계처리용량은 50kw가 적정(상계 허용용량 50kw로 확대, '16.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124	심해저 해양플랜트용 배관재 방사선 투과검사 관리기준 정비 - 심해저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 필요	원안위 (방사선 안전과)	(수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16.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물의 크기, 무게, 구조 등 물리적 특성과 용도, 작업공정(작업빈도 등), 작업장위치 등 업종의 특수성도 종합적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5. 신서비스 분과

가. 020 (과제 125~138번)

125	<u>온라인 전당포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규 완화 필요</u>	금융위 (서민금융과)	(기초치) 온라인 전당포 비즈니스 모델의 취지 등을 고려, 계약체결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 등 방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16.7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 2항 개정
-----	------------------------------------	----------------	---	--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26	<p><u>새로운 택시 앱미터기 도입</u></p> <p>- 스마트폰에 장착된 GPS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 방식 미터기 사용 불가</p>	<p>국토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p>	<p>(기초치) 현재, 카드결제기 - 스마트폰 앱(app)간 무선통신 연동을 통해 결제서비스 제공 중이며 앱미터기 기준의 단말기 도입여부는 연구용역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16.6월)</p>	<p>● 자동차관리법 또는 시행령 개정 *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p>
127	<p><u>차량공유서비스 본격적 확산을 위한 규정 개선</u></p> <p>- 면허·자격 기반으로 Ride-sharing에 대한 차별 및 불법분류 기준 존재, Car-sharing의 경우 50대 이상 차량 등록기준 존재</p>	<p>국토부 (신교통개발과)</p>	<p>(대안마련) Car-sharing은 구역을 특정 지자체로 한정하여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완화 추진('16.9월) Ride-sharing은 기존업자와의 형평성, 무자격자에 의한 사고 우려 등으로 수용곤란</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63조</p>
128	<p><u>운전면허 정보확인시스템 제공 확대</u></p> <p>-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 조희 권한을 대리운전 업종에도 허용</p>	<p>경찰청 (교통기획과)</p>	<p>(수용) 인터넷 앱 통해 운전자가 정보수집기관(경찰청)에 정보제공 동의하고,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가능한 시스템 구축 ('17년 예산반영 추진)</p>	
129	<p><u>주차장 공공데이터 접근 편의성 개선</u></p> <p>-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의 일원화된 관리 및 활용 필요</p>	<p>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p>	<p>(수용) 민간에서 자료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6.4월)하고 지자체는 동 시스템에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를 입력추진</p>	<p>* 「주차장법」에서 각 지자체별 교통·주차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공급 및 수요조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부여</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30	<u>통신판매업신고 등 온라인 전용규제 개선</u> - 오프라인 음식점 제휴 오픈마켓을 통한 예약금 선결제 서비스 제공시 음식점의 통신판매업신고 대상여부 불분명	공정위 (전자거래과)	(수용) 오픈마켓에서 식당 예약 및 No-show 방지위한 예약금 선결제 서비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유권해석 및 지침을 알아보기 쉬운 표 형태로 작성·배포('16.5월)	*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131	<u>처방약의 배송 허용</u> -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하여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의 배송 허용	복지부 (약무정책과)	(미해결과제)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의약품 안전사용 저해	● 약사법 제50조
132	<u>사업자 휴/폐업 정보제공</u> - 국세청 제공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서비스의 상업용도 사용금지 및 대량조회 제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수용) 사업자등록 휴/폐업 정보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 대량조회 금지 문구는 삭제	* 시스템상 대량조회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은 없으며, 해당 조회화면에 “자동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조회할 수 없음” 문구가 게시되어 있으나 삭제조치 예정
133	<u>O2O 서비스분야 법률컨설팅 지원 등</u>	미래부 (창조융합기획과)	(수용) '16년 하반기 중 O2O 스타트업에 대한 시범 자문 실시후 '17년부터 정례화를 추진하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 홍보 및 제공	★ 영국 대학참여펀드(UCSF), 중국 창업실습기지, 싱가포르 기술인큐베이션 프로젝트 등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34	<p><u>임금 수령방법 개선 및 수수료 자율화</u></p> <p>- 직업중개 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및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및 수수료를 자율화</p>	고용부 (고용서비스 정책과/ 근로기준 정책과)	<p>(일부수용) 임금의 중간착취 피해 방지, 분쟁증가 우려 등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은 불수용, 구인자에게 받는 소개요금 한도는 폐지토록 직업안정법령 개정 ('16.9월 국회 제출)</p>	<p>●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p>
135	<p><u>공유민박업 면적 제한 완화</u></p> <p>- 공유민박업 면적이 230m²로 제한되어 고급민박 공급 불가능</p>	문체부 (관광산업과)	<p>(대안마련) 면적 요건 완화 (연면적 230m² 이하→객실 5개 이하 (주인거주객실포함)), 영업일수 제한 완화(4개월→6개월) 등 대안마련 통해 고급민박 가능토록 개선하고, 공유민박업자에 불필요한 부담 주는 '숙박일지 작성의무' 대신 '분기별 영업일수 보고의무'로 대체 검토</p> <p>* 19대 국회내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하고, '16년내 등 법 개정시 수정사항 반영</p>	<p>● 규제프리존법 제58조</p> <p>★ 美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면적제한' 없이 '연중 영업 가능(공유민박업자 연중 275일 이상 거주조건)'</p>
136	<p><u>공유민박업 관련 외국업체와의 역차별 해소</u></p> <p>- 공유민박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사실상 국내업체에만 적용되고,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업체는 규제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p>	문체부 (관광산업과)	<p>(기초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법령 준수 의무가 존재</p>	<p>* 에어비앤비 : 숙박 예약 중개 사이트로서 개인의 주거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37	<p>공공채용정보 사이트 자료 공유 요청</p> <p>- 공공채용정보 사이트(잡알리오)의 게시글 활용하고자 하나 URL 사용제한 및 단순편집 등 활용 불가</p>	<p>기재부 (경영정보과)</p>	<p>(수용) 저작권법 제24조의2 등에 근거,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잡알리오의 저작권 정책을 개정하고 각각의 채용정보를 별도의 URL로 표시("16.4월)</p>	<p>* 잡알리오 :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채용정보 사이트로서 채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직자 맞춤형 채용정보서비스 제공</p>
138	<p>온라인 경매사업자 시설 확보 완화</p> <p>- 온라인 자동차 경매사업사에게 주차장 등의 오프라인 시설 확보 요구</p>	<p>국토부 (자동차정책과)</p>	<p>(수용) 매매업계·온라인업계 및 민간전문가 등 참여, 민·관합동 협의회 구성 논의 등으로 관련 규정 개정 추진("16.12월)</p>	<p>●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4호 및 제50조 개정</p>

5. 신서비스 분과

나. 핀테크 및 금융분야 (과제 139~151번)

139	<p>핀테크업체 전용회선 사용여부 명확화</p>	<p>금융위 (전자금융과)</p>	<p>(기초치) 현재 전자금융업자(핀테크업체)와 전자금융보조사업자 간 전용회선 사용의무 규정 없으므로 핀테크업계에서 유권 해석 요청시 공문을 통해 사용의무 없음을 통보</p>	<p>* 규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간 접속 시 전용회선을 사용토록 함</p>
140	<p>전자금융기업 보안성 심의 가이드 마련</p> <p>-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신규 전자금융업무 수행 시 보안성 심의를 복수 금융회사가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p>	<p>금융위 (전자금융과)</p>	<p>(수용) 보안성 심의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은 없으며 핀테크업계에서 유권 해석 요청 시 공문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통보</p>	<p>* 자체 보안성 심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 등)가 신규 전자금융업무 수행 전 자체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보안성을 검토</p>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41	<u>보험업 등의 수행을 위한 전산 인력 및 설비의 외부위탁 허용</u>	금융위 (보험과)	(기초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의해 이미 원칙 수용(다만,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	* 보험업법 및 클라우드법에 따라 전산 인력 및 설비의 외부위탁 허용
142	<u>금융회사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허용</u>	금융위 (전자금융과)	(일부수용) 전용회선 또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원격관리 허용할 예정('16.12월)	● 전자금융감독규정(고시) 제15조 제2항 개정
143	<u>전자이체서비스 이용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규제 완화</u>	금융위 (전자금융과)	(수용) 다양한 핀테크 기술 활용 가능하도록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16.6월)	● 전자금융감독규정(고시) 개정안 입법예고('16.4.19~)
144	<u>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방법 확대</u> - 기존 공인전자서명 방식 외에도 ARS, 녹취방식 등으로도 확대 필요	금융위 (은행과)	(수용) 현행 정보제공동의 방식을 정보제공자 동의자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16.7월 입법예고 예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45	<u>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방식을 다양화</u> - 정보제공 사실 통보를 서면, 전자문서 외에도 보안이메일 방식으로 확대 요청	금융위 (은행과)	(기초치) 보안이메일이 전자문서 요건에 해당되어 금융거래정보 제공통보 시 보안이메일 방식 전송 가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보안이메일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도 전자문서 범주에 포함
146	<u>신용카드를 활용한 송금거래서비스 도입 요청</u> - 개인 간 송금거래를 신용카드로 대체할 경우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금융위 (중소금융과)	(규제존치인정) 불법현금유통(카드깡) 등의 금융시장 혼란 및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필요	* 신용카드가맹점 금지 사항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규정
147	<u>P2P 대출서비스업의 별도 규율체계 (전자여신대행업) 마련</u> - P2P 대출서비스 업체가 대부업자로 분류되어 불특정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제한	금융위 (서민금융과)	(규제존치인정) 제도 개선 시 별도의 규제신설이 불가피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중장기 검토	★ (미국)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여 증권법 적용 (일본) 대부업, 금융상품거래업 규제적용 (영국) 최소자본규제, 고객자금보호, 공시의무 등 규제
148	<u>가맹점별 보안인증방식 도입 허용</u> - 신용카드사가 아닌 카드가맹점도 새로운 보안인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위 (중소금융과)	(대안마련) 현재 카드 부정사용 손실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므로 카드사 협조가 필수. 다만, 보안인증 업체가 카드사에 사업설명·제안할 수 있는 기회 마련("16.6월)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원칙상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법 제17조제1항)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개선방안	비고(해외사례 등)
149	<u>신용카드 정보 저장이 가능한 PG사의 자격요건 완화</u> - 신용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한 전자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의 기준이 자본금 40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	금융위 (중소금융과)	(수용)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하여 완화된 재무 기준 마련('16.9월)	* 자본금 요건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규정
150	<u>스마트폰의 신용카드 단말기 적용제외</u> - 여러종류의 스마트폰에 대해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만족 필요하여 이중규제 발생	금융위 (중소금융과)	(규제준치인정) 스마트폰 지불결제서비스 제공시에 스마트폰은 신용카드단말기로 판단 필요. 다만, 스마트폰에 맞는 적정수준의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여 중장기 검토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 보호대책은 모든 전자적 장치(ATM 등)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기준을 정한 것이고,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은 민감정보 송수신시 정보보호가 목적
151	<u>신용카드 단말기 인증 절차 간소화</u> - 카드단말기 보안시험 인증까지 장기간소요, 파생모델도 인증 시험항목이 동일	금융위 (중소금융과)	(수용) 시험인력 충원을 통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 단축하였고, 모바일 형식의 단말기 등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는 시험 및 인증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 할 예정('16.9월)	* 현재 신규 단말기의 경우 약 35영업일 이내(기존 45~50영업일), 파생 모델은 약 15영업일 이내(기존 25~30영업일) 시험인증 절차 완료 가능